

#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 방향성 재정립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through  
the Re-establishment of the Direction of  
the Copyright OK)

(사)국제전자상거래연구원

연구책임자 임 규 건

2022. 08. 17



# 제 출 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 용역과제인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 방향성 재정립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08월 17일

- 주관연구수행기관명 : (사) 국제전자상거래연구원
- 연구책임자 : 임 규 건 (한양대학교 교수)
- 연 구 원 : 안 재 익 (한양대학교 박사수료)
- 연 구 원 : 손 다 연 (한양대학교 석사과정)
- 연 구 원 : 김 동 우 (한양대학교 석사과정)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 용역과제 수행사의 의견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종보고서 초록

관리번호	KP 연구 2022-21	연구기간	2022년 04월 06일 ~ 2022년 07월 31일		
정책과제명	(한글)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 방향성 재정립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연구 (영문)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through the Re-establishment of the Direction of the Copyright OK				
연구책임자 (주관연구수행기관)	임 규 건 (사)국제전자상거래연구원	참여 연구원수	총 4 명	연구 용역비	20,000천원
요약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500자 이내에서 개조식으로 작성)				면수	103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작권 이슈와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한계점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의 사업의 개선 방향과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음</li> <li>▷ 현행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는 평가 기준 혼란, 온·오프라인 통합 운영, 사후 관리의 어려움, 제도의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가 존재함</li> <li>▷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운영과 품질성·윤리성 기준에 따라 4가지 유형별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특징, 장단점, 운영방안, 평가기준, 사후관리 등을 제시함</li> <li>▷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단계별 확장 방안으로 운영 계획과 사후관리 체계화, 저작물 이용자로의 적용 범위 확대, 신규 플랫폼(메타버스, NFT, VR/AR, 인공지능 등) 지정 범위 확대를 제시하였음</li> <li>▷ 이에 따른 신규 플랫폼에 대한 저작권 안심 지정 방안, 신규 혜택 사항 발굴을 통해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포함하였음</li> </ul>					
색인어	한글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			
	영어	Copyright OK			

## 〈목 차〉

1장 연구 개요 .....	12
1절 연구 배경 .....	12
2절 연구 목적 .....	12
3절 주요 연구 내용 .....	12
4절 연구 프레임워크 .....	13
2장 저작권 이슈와 저작권 안심 제도의 현황 .....	14
1절 국내외 저작권 이슈 .....	14
1. 불법 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 침해 현황 .....	14
2.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현황 .....	15
3. SNS 및 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이슈 .....	16
2절 저작권 안심 제도 현황 .....	19
1. 저작권 안심이란? .....	19
2. 저작권 안심 제도의 지정 현황 .....	19
3. 저작권 안심 제도의 지정 요건 및 방법 .....	22
4. 저작권 안심 제도의 지정 혜택 및 마크 .....	22
5. 저작권 안심 운영 매뉴얼과 사후관리 .....	23
6. 저작권 안심 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 .....	24
3장 저작권 안심 제도의 한계 분석 및 개선 방향 설정 .....	26
1절 저작권 안심 제도의 변천사 .....	26
2절 클린사이트 (구. 저작권 안심제도(2009))의 설정 방향 및 이유 .....	26
1. 배경 및 기대효과 .....	27
2. 지정 절차 및 평가방법 .....	27
3절 저작권 OK (구. 저작권 안심제도(2015))의 설정 방향 및 이유 .....	29
1. 윤리성 vs 품질성 .....	29

2. 개방형 vs 폐쇄형 .....	30
3. 당락형 vs 등급형 .....	30
4. 제품지정 vs 매장지정 .....	30
5. 사후평가 및 지정마크 .....	30
4절 저작권 안심 제도 FGI 분석 .....	32
5절 현행 저작권 안심 제도(2022)의 문제점 및 한계점 종합 .....	34
1. 저작권 안심 제도의 평가기준 모호 .....	34
2. 저작권 안심 제도의 정체성 혼란 .....	34
3. 오프라인 지정 실효성에 대한 의문 .....	34
4.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어려움 .....	35
6절 저작권 안심 제도 개선 방향성 설정 .....	35
1. 저작권 안심 제도 개선 방향성 제안 .....	35
2. 저작권 안심 제도의 개선 방향 도출 .....	38
3. 저작권 안심 제도 개선 방향 설정 종합의견 .....	39
4장 저작권 안심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42
1절 관련 유사 제도 현황 조사 및 비교분석 .....	42
1. 품질성 중심의 관련 유사 제도 .....	43
2. 윤리성 중심의 관련 유사 제도 .....	48
3. 관련 유사제도 전체현황과 비교분석 .....	53
2절 저작권 안심 제도 유형별 운영 방안 .....	57
1. Plan A : 윤리성 기반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운영 .....	58
2. Plan B: 품질성 기반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운영 .....	59
3. Plan C: 윤리성 기반 온라인 운영 .....	60
4. Plan D: 품질성 기반 온라인 운영 .....	61
3절 저작권 안심제도 유형별 세부 평가기준 및 사후관리 .....	62

1. Plan A의 세부 평가기준 및 사후관리방안 .....	62
2. Plan B의 세부 평가기준 및 사후관리방안 .....	64
3. Plan C의 세부 평가기준 및 사후관리방안 .....	66
4. Plan D의 세부 평가기준 및 사후관리방안 .....	67
4절 저작권 안심제도의 방향 및 지정절차 .....	69
5절 저작권 안심제도 지정마크 .....	71
1. 저작권 안심제도의 지정마크 현황 .....	71
2. 저작권 안심제도 지정마크 개선방안 .....	71
5장 저작권 안심 제도 중장기 사업 확장 방안 .....	73
1절 신규 플랫폼에 대한 저작권 안심 지정 방안 .....	73
1. 신규 플랫폼의 저작권 쟁점 .....	73
2. 신규 플랫폼에 대한 저작권 안심 지정 평가 기준 적합성 분석 .....	78
3. 신규 플랫폼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 개선 방안 및 운영 매뉴얼 .....	85
2절 저작권 안심 제도의 신규 혜택 사항 .....	87
1. 저작권 안심 제도 신규 혜택 사항 발굴 .....	87
2. 저작권 안심 제도 단계별 신규 혜택 사항 제시 .....	89
3절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 향후 발전 방안 .....	91
1. 정체성 확립과 운영방안 정비 .....	91
2. 저작권 안심 제도 적용 대상 확대 .....	91
3. 신규플랫폼 확장 .....	92
6장 결론 .....	93
1절 저작권 이슈와 안심제도의 현황 .....	93
2절 저작권 안심 제도의 한계 분석 및 개선 방향 설정 .....	93
3절 저작권 안심제도 개선 방안 도출 .....	93
4절 저작권 안심 제도 중장기 사업 확장 방안 .....	94

## 〈표 목차〉

〈표 1〉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	14
〈표 2〉 2022년 장르별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	15
〈표 3〉 최근 5년간 저작권 안심 지정 현황 (년도별 누적 지정수) .....	20
〈표 4〉 저작권 안심 온라인 지정현황 .....	20
〈표 5〉 저작권 안심 오프라인 지정현황 .....	21
〈표 6〉 저작권 안심 주요 운영 매뉴얼 및 사후관리 .....	24
〈표 7〉 저작권 안심 제도 세부 평가 기준표 .....	25
〈표 8〉 2015년 저작권 OK 모델 도출표 .....	29
〈표 9〉 국내 유사 제도 분류 .....	42
〈표 10〉 관련 유사제도 전체 현황 .....	53
〈표 11〉 Plan(유형)별 운영방안 .....	57
〈표 12〉 Plan A 세부 평가기준 .....	62
〈표 13〉 Plan A 사후관리 방안 .....	63
〈표 14〉 Plan B의 세부 평가기준 .....	64
〈표 15〉 Plan B의 사후관리 .....	65
〈표 16〉 Plan C의 세부 평가기준 .....	66
〈표 17〉 Plan C 사후관리 방안 .....	67
〈표 18〉 Plan D의 세부 평가기준 .....	67
〈표 19〉 Plan D 사후관리 방안 .....	68
〈표 20〉 신규 플랫폼 구분별 저작권 쟁점 .....	77
〈표 21〉 메타버스 저작권 안심 지정 평가기준 적합성 분석 .....	79
〈표 22〉 NFT 저작권 안심 지정 평가기준 적합성 분석 .....	81
〈표 23〉 VR/AR 저작권 안심 지정 평가기준 적합성 분석 .....	83
〈표 24〉 인공지능 저작권 안심 지정 평가기준 적합성 분석 .....	85



<표 25> 단계별 신규 혜택 사항 .....90

##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 프레임워크 .....	13
[그림 2]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	15
[그림 3] 저작권 보호 이해 및 준수 수준 (10점 만점 기준) .....	16
[그림 4] 저작권 안심제도 지정마크 .....	19
[그림 5] 저작권 안심제도 지정절차 .....	22
[그림 6] 저작권 안심제도 지정서 및 지정마크 .....	23
[그림 7] 저작권 안심제도의 지정마크 변천사 .....	26
[그림 8] 클린사이트 (2009년) 지정마크 .....	28
[그림 9] 클린사이트 지정절차 .....	28
[그림 10] 클린사이트 세부 평가항목 .....	28
[그림 11] 저작권 OK (2015) 지정마크 .....	31
[그림 12]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 개선방향 설정 .....	35
[그림 13] 저작권 안심 제도 개선방향 도출 .....	38
[그림 14] KC인증 절차 .....	44
[그림 15] KC인증 마크 .....	44
[그림 16] KS인증 절차 .....	45
[그림 17] KS인증 마크 .....	45
[그림 18]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절차 .....	46
[그림 19] GAP인증 마크 .....	46
[그림 20] 한국관광 품질인증 절차 .....	47
[그림 21] 한국관광 품질인증 마크 .....	47
[그림 22] 환경성적표지 절차 .....	49
[그림 23] 환경성적표지 마크 .....	49
[그림 24] 소비자중심경영인증(CCM) 절차 .....	50

[그림 25] CCM인증 마크 .....	50
[그림 26] 착한가격업소 지정 절차 .....	51
[그림 27] 착한가격업소 지정 마크 .....	51
[그림 28] 저작권 안심 절차 .....	52
[그림 29] 저작권 안심 마크 .....	52
[그림 30] 유사 제도 혜택 비교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56
[그림 31] 윤리성 기반 지정절차 .....	70
[그림 32] 품질성 기준 지정절차 .....	70
[그림 33] 영풍문고 왕십리역점 저작권 OK 지정현판 현황 .....	71
[그림 34] 사랑의 열매 마크 및 응용 디자인 .....	72
[그림 35] 착한가격 캠페인 마크 .....	72
[그림 36] 국산 배추김치 사용 캠페인 마크 .....	72
[그림 37] 2022년 저작권 보호 이슈 전망 순위 .....	73
[그림 38] 저작권 안심 제도 신규 혜택 사항 제시 .....	87
[그림 39]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 향후 발전방안 .....	91

# 1장 연구 개요

## 1절 연구 배경

- 합법과 불법이 혼재한 과거 콘텐츠 시장과 무인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사업인 저작권 안심 지정 제도는 저작권의 필요성에 대한 이용자와 사회적 인식 및 공감대 형성이 향상됨에 따라 시대에 맞는 사업 방향성 및 혁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저작권 안심 지정 제도는 초기 윤리성 기반의 캠페인으로 설계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영방침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지고 제도의 정체성이 모호해져 실용성이 축소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저작권 안심 지정 제도 사업의 정체 방지 및 지속적인 지정 신청 증대를 위한 올바른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추진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절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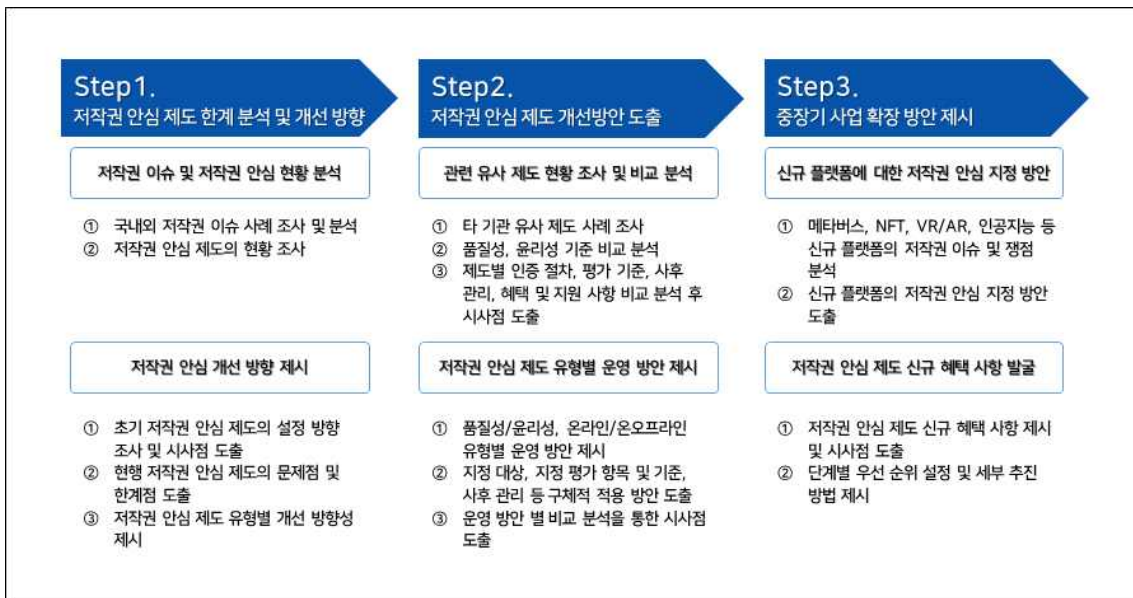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작권 안심 지정 제도의 개선 방안과 중장기 사업 확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저작권 안심 지정 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타 기관 유사 제도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저작권 안심 지정 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에 있음
-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초기 제도의 설정 방향 분석, 현행 제도의 한계점 분석, 지정평가위원회 FGI를 수행하여 제도 개선 방향에 따른 플랜별 운영 방안과 중장기 사업 확장 전략 및 추진 방안을 제시함

## 3절 주요 연구 내용

- 국내외 저작권 이슈 및 저작권 안심 지정 제도 현황 조사
- 현행 저작권 안심 지정 제도의 한계점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 타 기관 유사 제도 사례 조사 및 비교 분석
- 저작권 안심 지정 제도 개선 방안 및 운영 매뉴얼 제시
- 중장기 사업 확장 방안 제시

## 4절 연구 프레임워크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저작권 안심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후 관련 유사 제도 현황 조사 및 비교 분석을 통해 저작권 안심 제도의 유형별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신규플랫폼(메타버스, NFT, VR/AR,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 안심 지정 방안과 저작권 안심 제도의 신규 혜택 사항을 발굴하여 중장기 사업 확장 방안을 제시함
- 이를 위해 [그림 1]의 연구 프레임워크와 같이 문헌 조사 및 분석, 통계 자료 분석,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연구를 수행함



[그림 1] 연구 프레임워크

## 2장 저작권 이슈와 저작권 안심 제도의 현황

### 1절 국내외 저작권 이슈

#### 1. 불법 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 침해 현황

- IT 기술의 성장 및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1년 콘텐츠 이용량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음
-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면서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유통시장 역시 함께 커지고 있음
- 콘텐츠처럼 정보를 창출하는 산업은 정보가 쉽게 복제되기 때문에 불법 복제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콘텐츠는 더 취약함
- 따라서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개인이나 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부 및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상 유통되는 불법 저작물 유통 실태와 현황조사를 실시한 ‘2022년 1분기 온라인 저작권 침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경로별로 국내, 국외 서버 사이트를 통해 1분기 불법 복제 유통량은 총 377,078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음<sup>1)</sup>

<표 1>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단위: 건)

구분	국내서버 사이트			국외서버 사이트			
	웹하드	포털	기타 (SNS등)	토렌트	스트리밍 링크	웹툰	기타 (유튜브 등)
유통량	30,717	3,231	368	259,404	40,176	42,518	664
비중	8.1%	0.9%	0.1%	68.8%	10.7%	11.3%	0.2%
합계	34,316(9.1%)			342,762(90.9%)			
	377,078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1) 2022년 1분기 온라인 저작권 침해 분석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 2.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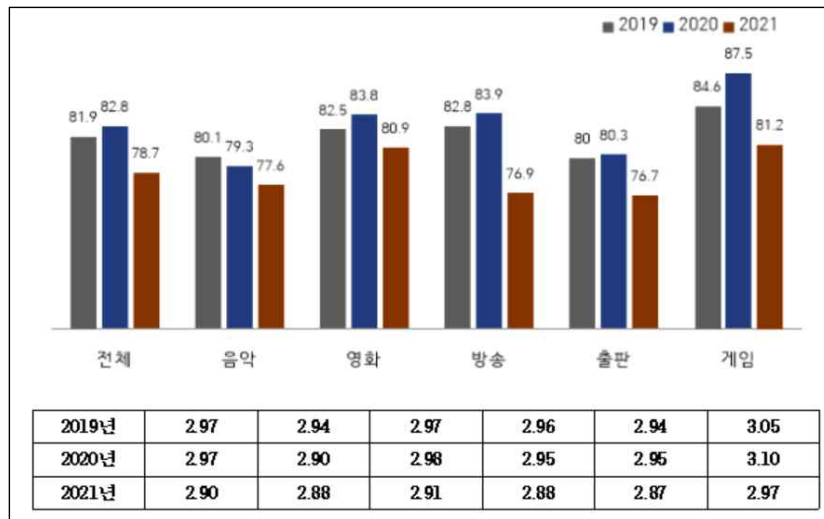
- 불법 콘텐츠에 대한 유통이 확산되면서 전 분야에서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
- 2022년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게임, 영화, 음악, 방송, 출판 순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이 확산되는 콘텐츠일수록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sup>2)</sup>
- 또한, 콘텐츠 이용자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에 대한 의견에서는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불법 복제 파급효과, 가치판단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용자들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불법 복제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음
- 따라서 저작권 안심제도 개선 및 확산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있어 합법 저작물 이용을 권장하고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심각성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022년 기준 장르별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은 <표 2>와 같으며 지난 3년간의 비교는 [그림 2]와 같음

<표 2> 2022년 장르별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단위 : %, (4점만점))

구분	심각함(%)	심각하지 않음(%)	평균(점)
전체	78.7	21.3	2.90
음악	77.6	22.4	2.88
영화	80.9	19.1	2.91
방송	76.9	23.1	2.88
출판	76.7	23.3	2.87
게임	81.2	18.8	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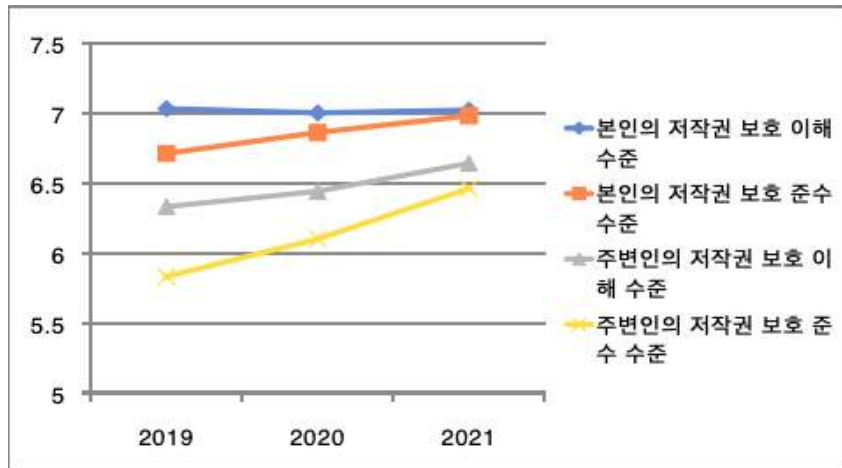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그림 2]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2)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종합),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그림 3] 저작권 보호 이해 및 준수 수준 (10점 만점 기준)

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 [그림 3]의 본인과 주변인의 저작권 보호 이해 및 준수 수준(2021년)에 대하여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본인의 저작권 보호 이해 수준’은 7.02점, ‘본인의 저작권 보호 준수 수준’은 6.98점, ‘주변인의 저작권 보호 이해 수준’은 6.64점, ‘주변인의 저작권 보호 준수 수준’은 6.64점으로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본인이 주변인보다 저작권 보호 이해 및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준수보다는 이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저작권 보호 이해 및 준수 수준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3. SNS 및 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이슈

- SNS는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요약되는 웹 2.0시대의 도래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함<sup>3)</sup>
- SNS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자신의 창작물 대신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sup>4)</sup>
- 또한, SNS를 통한 불법 저작물 유통 및 프로필 사진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1인 미디어’란 1인 미디어는 개인(크리에이터)들이 스스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라이브, VOD 등의 형태로 방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는 유튜브, 아프리카 TV, 트위치, 인스타그램, 틱톡 등이 있음<sup>5)</sup>

3) 박성민(Park Sung-Min). “SNS상의 저작권침해 유형과 경미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법의 자제.” 刑事法研究 26.3, 149-177, 2014.

4) 김지영, “[강사의 서재]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등 ‘인터넷 저작권법’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원의 『인터넷에서 저작권』“, 한국강사신문, 2022.03.22.

5) 이강석(Kang-Suk Lee). “1인 미디어 시대의 영상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3.3, 523-530, 2022.



- 초창기에는 저작물과 관련된 문제들 중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주로 발생함
- 그러나 요즘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자체를 이용하는 부분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가. SNS에서의 주요 저작권 쟁점

- SNS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쌍방향의 정보 교환 및 공유가 가능한 공간이며, 자동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업데이트 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정보 및 콘텐츠의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함<sup>6)</sup>
- SNS상의 저작권 침해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저작권 보호 이슈로 선정되었으며 인스타그램 리그램, 트위터의 리트윗, 페이스북의 공유 등과 같은 타인의 글, 이미지 등을 허락 없는 저작물 공유 유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 또한, 최근 대법원 사례에 따르면 SNS를 통한 불법 저작물 유통의 상황에서 불법 링크를 게시한 행위자에게 저작권 침해 방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음<sup>7)</sup>
- 새로운 형태의 SNS 등장과 기능이 추가되는 등 SNS 이용 형태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이슈 및 쟁점이 달라지고 있음
- SNS는 저작권에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례가 있음

**※SNS에서의 저작권 관련 사례<sup>8)</sup>**

- ✓ 사례 1. 미국의 ‘트위터 개인 사진 무단 사용’ 사건
  - 최근 미국에서는 트위터 사용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언론 매체의 저작권법 침해 여부가 문제된 바가 있음
  - 이 사건에서는 언론매체에서는 약관상 트위터 사용자는 트위터에 올리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책임에 대해 부정함
  - 그러나 법원에서는 언론매체가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sup>9)</sup>
- ✓ 사례 2. 벨기에의 ‘SABAM 음악 및 동영상 파일 무단 공유’ 사건
  - 벨기에의 음악 관리 회사인 SABAM이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 넷로그를 상대로 사용자들에게 음악과 동영상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음
  - 이 사건에 대해서 유럽재판소는 저작권 모니터링은 정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함
  - 이에 따라서 제공자의 사업권 침해 및 저작권자들이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불법 파일 공유를 방지할 목적으로 필터링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결함

6) 이현경, “SNS에서의 저작권법적 쟁점.” Law & technology 8.6 (2012): 32-64.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중심으로.

7) 2022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나. 1인 미디어(유튜브, 틱톡, 아프리카 TV 등)에서의 저작권 쟁점

- 현재는 1인 미디어 시대라고 불릴 만큼 1인 미디어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음
- 유튜브와 숏폼과 같은 1인 미디어의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두 주체는 창작자와 플랫폼으로 콘텐츠의 이용과 그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침해 등의 문제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1인 미디어 저작물 이용과정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며 이용하려는 저작물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함
- 또한, 저작권이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거 관계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유튜브와 숏폼 같은 플랫폼의 경우에는 제공자에 대한 복제 및 전송 중단에 대한 요구가 다른 콘텐츠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함
- 예를 들어,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 정책을 운영하여 저작권 위반 시 수익 창출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채널 생성 금지와 같은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행위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해외 플랫폼은 대부분 이용자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해외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대응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유튜브 및 1인 미디어 저작권 관련 사례<sup>10)</sup>**

✓ 사례 1. ‘미쳤어 UCC 사건’

- 53초 분량의 동영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사건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복제 전송의 중단 조치를 요구함
- 관련 쟁점은 인용 등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법원은 저작물의 양이 전체 74마디 중 7~8마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해 안에서 인용하였음을 인정함

✓ 사례 2. 야구 중계영상을 개인 채널에서 ‘편파 중계방송’ 하는 사건

- 위 사건은 지상파 방송에서 중계하는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 중계와 같은 실시간 방송을 개인 채널에서 중계하기 위해서는 허락이 필요함
- 그러나 ‘아프리카 TV’와 같은 플랫폼에서 중계권 구입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처리해주었다면 가능하며 항상 공지 사항 및 제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함

8) 2022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9) 전용준, SNS 및 포털 등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시정권고, 2022.

10)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 2절 저작권 안심 제도 현황

### 1. 저작권 안심이란?

-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은 정품 콘텐츠를 판매, 유통, 이용하는 사업자를 저작권 안심으로 지정하여 합법저작물 판매와 이용을 유도하는 건전한 선순환 저작물 생태계 조성 구축 사업을 의미함<sup>11)</sup>
- 이는 정품과 불법 복제물에 대해서 소비자의 판단이 어렵거나 피해가 있을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품 콘텐츠를 판매, 유통, 서비스하는 곳을 저작권 OK 업체로 지정하여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있음
-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2015년에 저작권 OK라는 사업을 시작으로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음



[그림 4] 저작권 안심제도 지정마크

### 2. 저작권 안심 제도의 지정 현황

- 2022년 2월 기준 온라인 지정 수는 2021년 대비해 대략 3.15% 감소하였고, 오프라인 지정 수는 2021년 대비해 동일하며, 온·오프라인 총 누적 지정 수는 2021년 대비해 1.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2월 기준 오프라인 지정 수는 383건으로, 2018년부터 2022년(2월 기준)까지 오프라인의 감소율은 약 60% 이상 감소함
- 특히 2019년 이후 오프라인 지정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2019년 대비해 2020년부터 1227건에서 384건으로 약 70%이상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2019년 이후 코로나 19의 지속으로 인하여 비대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오프라인 콘텐츠 이용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저작물의 유통 및 판매 과정을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해가고 있음
-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확대 및 증가에 따라 정품지정의 관심 또한 온라인 시장 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합한 정책이 필요함
- 2009년부터 운영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지만 안심 지정 누적 지정

11) 한국저작권보호원홈페이지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 안내

수는 2020년에 들어서 감소세를 띠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저작권 안심 지정 현황은 <표 3>과 같음

- 저작권 안심 온라인 지정 현황의 경우 2022년 (2월 기준) 교육, 기타(공공,DB,이미지 등) 콘텐츠의 경우 2021년 대비해 동일한 반면에 그 외 뉴스(4.62%), 만화(2.08%), 음악(4.17%), 출판(8%), 영상(16.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저작권 안심 오프라인 지정 현황을 통해 2022년 2월 기준 저작권 안심 지정 업체 수는 총 383개로 파악되며,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각각의 저작권 안심 콘텐츠별 온라인, 오프라인 지정 현황은 <표 4>, <표 5>와 같음

<표 3> 최근 5년간 저작권 안심 지정 현황 (년도별 누적 지정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월
온라인	217	274	288	286	277
오프라인	1,112	1,227	384	383	383
합계	1,329	1,501	672	669	660

<표 4> 저작권 안심 온라인 지정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월	전년 대비 증감률(%)	비고
뉴스	65	62	-4.62%	
만화	48	47	-2.08%	만화, 웹툰 등
음악	48	46	-4.17%	음원, 악보, MR 등
교육	39	39	0.0%	e러닝
출판	25	23	-8.0%	ebook, 도서 등
영상	6	5	-16.67%	영화, 드라마 등
기타	55	55	0.0%	공공, DB, 이미지 등
합계	286	277	-3.17%	

〈표 5〉 저작권 안심 오프라인 지정현황

구분	소계(2022년 2월 기준)
서울특별시	160
인천광역시	15
부산광역시	21
대구광역시	16
대전광역시	7
광주광역시	13
울산광역시	2
경기도	99
세종	2
강원	6
충북	5
충남	6
경북	8
경남	11
전북	7
전남	3
제주	2
합계	383

### 3. 저작권 안심 제도의 지정 요건 및 방법<sup>12)</sup>

- 주로 내외국인 이용자가 이용하게 하는 목적으로 합법 저작물을 유통 및 이용하는 서비스(플랫폼)로, 보호원의 지정을 받음
- 지정요건으로는 합법 저작물을 유통 및 이용, 국내 사업자등록증 보유 사업자(기관), 합법 저작물 판매 및 이용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개시한지 3개월 이상이 만족되어야함
- 위 지정요건에 부합한 기업 중 신청, 심사, 평가, 지정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며 [그림 5]와 같음
- 유효기간은 지정확정일로부터 2년이 부여되며 그 이후에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재신청 후 심사를 통해 유지가 결정됨
- 지정사가 된 이후에는 저작권 안심 지정서와 지정마크, 지정현판이 부여되며 온라인, 오프라인 각각 마크 및 현판을 부착해야함



[그림 5] 저작권 안심제도 지정절차

### 4. 저작권 안심 제도의 지정 혜택 및 마크

- 이에 따른 혜택으로는, 지정사 및 예비 지정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 컨설팅, 맞춤형 상담 제공이 있으며, 찾아가는 저작권 관리 컨설팅 제공과 국내 저작권 관련 소송 시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함
- 또한, 지정사 및 예비지정사 대상 무료 교육과 사업 활성화 지원, 뉴스레터를 통한 지정사 소개 및 다양한 매체 홍보와 SNS, 블로그를 활용한 상시 홍보를 제공하고 있음
- 저작권 안심 지정마크는 저작권 보호의 안심 KEY(열쇠)라는 의미로 저작권 보호의 유통·이용, 안전, 활성화를 위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활성화를 상징하며, 모두가 안전하고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임을 확인하는 의미를 나타냄
- 현재 ‘저작권 안심’의 온라인, 오프라인 지정서 및 지정마크 디자인은 [그림 6]와 같음

12)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https://www.kcopa.or.kr/>

온라인 서비스 : 지정서, 지정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서비스 지정서에 한해 지정마크를 부여합니다.</li> <li>- 지정서는 홈페이지 하단, 모바일앱 하단에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li> </ul>
오프라인 서비스 : 지정서, 지정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 서비스 지정서에 한해 지정현판을 부여합니다.</li> <li>- 지정서는 매장내부, 혹은 외부에 현판을 부착해야 합니다.</li> </ul>

[그림 6] 저작권 안심제도 지정서 및 지정마크

### 5. 저작권 안심 운영 매뉴얼과 사후관리<sup>13)</sup>

- 저작권 안심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 평가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 또한,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만료일 전 후 6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통한 재지정 여부가 가능함
- 저작권 안심 지정 서비스는 몇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따라야함
- 사후 관리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나누어 진행되며, 온라인은 정기 모니터링과 매월 서비스 운영 여부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지고 오프라인은 연 1회 샘플링 현장점검과 요청이 있다면 현장 방문을 통하여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저작권 안심 지정 후 관리번호는 “제N□□□□S□□□(R□)호” 형식으로 부여하며 중간 영문은 콘텐츠 장르별로 다르게 구분함
- 저작권 안심 운영 매뉴얼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주요사항은 <표 6>과 같음

13)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https://www.kcopa.or.kr/>

〈표 6〉 저작권 안심 주요 운영 매뉴얼 및 사후관리

구분	주요 운영 매뉴얼	사후관리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내로 구성</li> <li>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 전 6개월 이내 연장 신청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월 1회 모니터링</li> <li>매월 서비스 운영 여부 모니터링</li> </ul>
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샘플링을 통한 연1회 현장점검</li> <li>요청 시, 현장방문을 통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li> </ul>

#### 6. 저작권 안심 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 14)

- 저작권 안심 평가 세부 기준은 온라인, 오프라인, 공통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온라인 항목의 평가 기준은 저작권법 및 보호정책 준수, 저작권 보호환경, 유해 저작물의 근절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 내에서 저작권법 및 현행 법령 위반 여부와 사이트 내에 이용자 보호 정책 구비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 오프라인 항목은 정품 저작물 유통 및 이용, 관리운영, 소비자 보호 3가지로 나누어 평가하며, 매장 또는 기관, 업체 등에서 정품 저작물 판매, 구매, 서비스 이용 여부와 이용자의 안심 구매를 위한 소비자 보호 환경 조성 중심으로 평가함
- 공통항목은 사업자 신고사항으로 최근 2년간 저작권 분쟁 여부와 합법적 콘텐츠 유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는 위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방법은 매뉴얼에 따라서 지정평가위원회가 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조건부 지정이나 보류로 결정될 수 있음
- 대부분 전원합의체로 회의 때 개별 의견을 많이 나누고 위원장 중재 하에 공통의견을 모아 결정함
- 위 기준과 함께 현 저작권 안심제도의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표 7〉과 같음

14)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https://www.kcopa.or.kr/>



〈표 7〉 저작권 안심 제도 세부 평가 기준표

유형	항목	현재 판단 기준
온라인	저작권법 및 보호정책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관련 정책 고지의 적절성(저장서비스 제공자 대상)</li> <li>- 반복적으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의 채택 및 적용 여부(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다목)</li> <li>- 사이트 내 불법 복제물에 대해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하였는지 여부(법 제103조 제4항)</li> <li>- 온라인상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처리 절차 구비 및 안내 여부(법 제103조)</li> <li>○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준수 여부(공공기관에 해당)</li> <li>-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및 고지 여부</li> <li>-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의 적절성 여부</li> <li>- 공공저작물 개방(공공누리 적용) 여부</li> <li>※ 공공기관 운영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지정 평가 전에 한국문화정보원의 평가진단을 받아야 함</li> </ul>
	저작권 보호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전용게시판 또는 자료실 등 사이트 내 저작권 침해 가능성 소지 여부</li> <li>○ 온라인서비스 내 불법 복제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도입 또는 대응 방안 구비 여부</li> <li>○ 불법 추정 서비스 링크 존재 여부 및 저작권 침해 서비스를 광고하는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li> </ul>
	유해 저작물의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트 내 이용자 보호 정책 구비 여부</li> <li>○ 저작권법 이외 현행 법령 위반 여부</li> <li>○ 성인 콘텐츠 접근 시 성인 지정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지 여부</li> </ul>
오프라인	정품 저작물 유통·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 또는 기관, 업체 내 정품 저작물 판매·구매·서비스·이용 여부</li> <li>- 불법복제물의 판매·구매·서비스·이용 여부</li> </ul>
	관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원들이 지정 사업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올바른 저작물 사용관리 등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li> <li>○ 저작물 자산현황 리스트 및 저작물 관리대장을 제대로 비치하여 관리하는지 여부</li> </ul>
	소비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의 안심 구매를 위한 소비자 보호 환경 조성 여부(저작물 유통사업장)</li> <li>- 구입한 콘텐츠의 하자나 피해 발생 시 적절한 피해 보상체계 구비 여부</li> <li>- 교환/환불/품질보증 안내 및 허위 정보 제공 여부</li> <li>- 정당한 가격을 표시하여 판매</li> </ul>
공통	사업자 신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법적 계약을 통한 콘텐츠만을 공급하는지 여부</li> <li>○ 최근 2년 간 신청업체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li> <li>○ 최근 2년 간 보호원으로부터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거·폐기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li> </ul>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 3장 저작권 안심 제도의 한계 분석 및 개선 방향 설정

#### 1절 저작권 안심 제도의 변천사

- 저작권 안심제도는 2009년 ‘클린사이트’ 부터 2015년 ‘저작권OK’, 2022년 ‘저작권 안심’ 순서로 변화해왔음
- ‘클린사이트’ 는 온라인 웹사이트 위주의 지정제도였고 ‘저작권OK’ 는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현 ‘저작권 안심’ 은 ‘클린사이트’ 와 ‘저작권OK’ 가 합쳐진 것으로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 저작권 안심제도는 주요 지정 대상이 달라짐에 따라 평가 진행 후 부여하는 지정마크 또한 변화해왔으며 디자인의 변천사는 [그림 7]과 같음
- 현 저작권 안심의 지정마크의 디자인은 ‘클린사이트’ 와 ‘저작권OK’ 에 비하여 공식적인 지정 마크라는 이미지가 더 부각됨



[그림 7] 저작권 안심제도의 지정마크 변천사

#### 2절 클린사이트 (구. 저작권 안심제도(2009))의 설정 방향 및 이유

- 2009년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는 불법복제물 없이 합법 콘텐츠만을 유통하는 사이트 지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작됨
- 클린사이트를 통해 저작권보호 수준 및 인식 제고를 어느 정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
- 그러나 지정에 대한 실적에 일부 치중됨과 온라인 유통 활성화에 따른 클린사이트 지정 범위, 평가절차,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 운영방안의 문제점들과 온라인상의 꾸준히 증가하는 불법유통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리부족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함

## 1. 배경 및 기대효과

- 클린사이트는 2009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콘텐츠의 이용을 도모하고 사이트를 관리함으로써 저작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의미함<sup>15)</sup>
- 인터넷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지정제도가 증가하고 있어서 인터넷으로 유통 및 서비스 될 수 있는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으로 제작됨
- 클린 사이트의 목적은 저작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밝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으며 향후 문화산업 발전에까지 기여하고자 함
- 적용대상은 저작물의 유통 및 배포가 목적인 사이트, 불공정 이용이 빈번한 블로그 및 카페, 기타 상업적 불법 저작물 등이 있음
- 도입 후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인터넷상의 문화 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 저작권자, 유통 및 서비스 사업자 상호간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2. 지정 절차 및 평가방법

- 클린사이트 지정제도는 신청 후 2단계의 평가를 통해서 지정되며 1차 평가에서는 정성평가로 가이드라인의 준수 정도만 평가하며, 2차 평가에서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함께함<sup>16)</sup>
-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은 저작권 관련 전문가, 정책 전문가, 보안 전문가 3그룹으로 나누어 3개 영역에서 3명 이상의 전문가로 총 5~7명의 전문가가 참여함
- 평가위원회는 제출서류에 따라 1차평가, 2차평가의 각 평가기준을 통과한다면 감점 및 가점 등의 추가적인 점수 합산을 통하여 평가하며 지정절차는 [그림 9]와 같으며 세부 평가항목은 [그림 10]과 같음<sup>17)</sup>
- 최종평가는 2개의 평가를 합쳐서 총점이 90점 이상이면 지정마크를 부여하며 지정마크는 [그림 8]과 같음<sup>18)</sup>
- 지정 마크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며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재지정 평가를 수행해야하며, 대신 재지정에 지정기관 절차는 2차 평가만 수행하고 재지정이 2회이상 침해율이 1% 미만인 웹사이트에 한정해서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연장이 가능함

15) 저작권보호센터, “클린사이트 지정”, <https://www.cleancopyright.or.kr/work/appoint.php>,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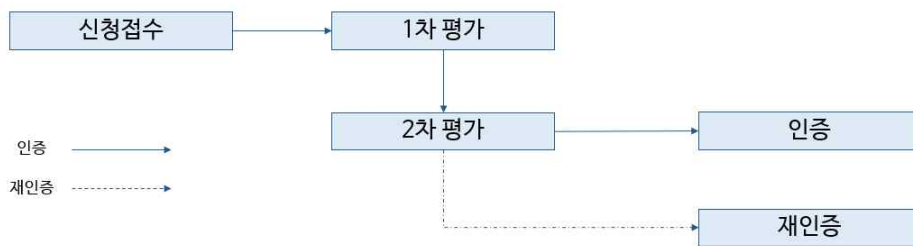
16) 저작권보호센터,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 및 지정체계 연구, 한국저작권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09.

17) 저작권보호센터, “클린사이트 지정”, <https://www.cleancopyright.or.kr/work/appoint.php>, 2022.

18)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5.



[그림 8] 클린사이트 (2009년) 지정마크



[그림 9] 클린사이트 지정절차

	대항목	소항목	가중치
1차 평가	1. 웹사이트 (30)	11.사이트의 저작권정책고지	5.0
		12.저작권침해예방 홍보공간 제공	10.0
		13.게시물 저작권 표기	5.0
		14.자료실 및 게시판	10.0
		15.저작권침해 신고서비스	10.0
		16.자료실 기능의 제공범위	30.0
		17.P2P 프로그램	30.0
		소계	100.0
	2. 기술적조치 (10)	21.기술적보호조치 채택	20.0
		22.기술적조치의 유형과 특성	20.0
		23.기술적조치의 성능평가	50.0
		24.보안조치 수준	10.0
		소계	100.0
	3. 관리운영 (10)	31.저작권보호 매뉴얼	20.0
		32.모니터링 및 저작권 위반 여부 식별	50.0
		33.인력/조직	30.0
소계		100.0	
4. 이용자관리 (10)	41.접근제한	50.0	
	42.불법 이용자 제재	50.0	
	소계	100.0	
2차 평가	5. 보호결과 (40)	51.침해율	80.0
		52.침해대응 테스트	20.0
		소계	100.0

주: ( ) 속은 대항목의 기본배점임.

[그림 10] 클린사이트 세부 평가항목

### 3절 저작권 OK (구. 저작권 안심제도(2015))의 설정 방향 및 이유

- 2015년 저작권 OK는 오프라인 정품 콘텐츠 업체들이 온라인 업체와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이를 지정해주는 제도에 대해 연구하는 것으로 시작됨
- 저작권 OK를 통해 정품 콘텐츠 이용을 도모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합법 저작물 제공사를 관리함으로써 저작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함
- 그러나 지속적인 저작권 OK 지정 확대를 위해 저작권 침해 상담과 다양한 홍보를 하였지만, 지정 대상 범위, 평가기준,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등 운영의 미흡에 따른 문제점 및 한계점이 존재함
- 저작권 OK는 지정제도 사례조사 분석 및 심층면접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5가지 지정모델 구성요소에 따라 의사결정을 진행함
- 5가지 지정모델 구성요소는 품질 지정과 윤리성 지정, 개방형과 폐쇄형, 당락 지정과 등급 지정, 제품 지정과 매장 지정, 마지막으로 사후평가 관대 또는 엄격으로 지정제도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표 8>과 같음<sup>19)</sup>

<표 8> 2015년 저작권 OK 모델 도출표

지정 모델 구성요소	선택한 요소	이유
윤리성 vs 품질성	윤리성	◆ 품질적인 차이는 없고, 윤리적 차이만 존재함
개방형 vs 폐쇄형	개방형	◆ 캠페인을 통한 윤리성 확대가 바람직함
당락형 vs 등급형	당락형	◆ 품질차이가 없고, 지속적으로 품질차이를 평가할 시 시스템 구축이 어려움
제품지정 vs 매장지정	매장지정	◆ <b>제품 지정</b> 은 복사영역에는 적용이 어렵고 관리가 어려움
사후평가 관대 vs 다소 엄격	다소엄격	◆ 지정의 권위가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 1. 윤리성 vs 품질성

- 품질성 지정제도는 제품 우수성 및 차별성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별도의 인센티브가 필요없음

19) 임규건, 최재영, 이웅희, “정품 콘텐츠 판매 오프라인 업체 지정제도 방안 연구: 저작권 OK 사례.” Information systems review 19.4 (2017): 27-42.

- 그러나 콘텐츠 산업 같은 경우 정품 콘텐츠와 불법콘텐츠 간 제품의 품질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품질 지정보다는 윤리적 가치를 독려함으로써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윤리성 지정제도’로 제도를 설계함
- 저작권 안심제도의 목표는 불법 콘텐츠 판매 및 유통에 대한 호기심 및 욕구를 감소시키고 정품 콘텐츠에 대한 중요함을 알리는 것이므로 캠페인성이 적합하다고 판단함
- 또한, 윤리성 지정제도는 낮은 참여도의 문제가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음

## 2. 개방형 vs 폐쇄형

- 지정을 얼마나 엄격하게 주는가에 따라서는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됨
- 개방형은 캠페인용으로 저작권 지정제도에 있어서는 진입장벽이 낮아 다양한 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정품 콘텐츠 사용의식과 준법정신을 높이는데 있어서 더욱 효율적임
- 그러나 개방형은 폐쇄형에 비하여 참여도가 낮을 수 있고, 지정이 남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참여도 향상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함

## 3. 당락형 vs 등급형

- 지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나누는 ‘당락형 지정’과 ‘등급형 지정’이 존재하는데 합정품 콘텐츠와 불법 콘텐츠는 품질 차이가 거의 없어 등급을 나누는 것이 어려움
- 따라서 저작권 지정에 있어서는 ‘당락형’이 적합하며 지정제도가 확산될 시 ‘등급형 지정’으로 전환하여 경쟁성과 지정권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4. 제품지정 vs 매장지정

- 정품을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품에 직접 마크를 붙여서 지정하는 방법과 매장에 붙여서 지정하는 2가지 방법이 있음
- 기업 측면에서는 소비자를 위해서는 제품에 부착하여 지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만 다른 지정 제도와 달리 콘텐츠라는 특성 때문에 저작권 지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음
- 음반, 영상물과 같은 콘텐츠는 생산과 유통구조가 각각 다르고 제품지정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매장지정’을 선택함

## 5. 사후평가 및 지정마크

- 지정을 완료한 사후평가에서는 본 지정제도가 캠페인성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윤리성 지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차후 지정제도가 남발되어 가치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소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 또한, 지정마크에 대해서는 지정받은 업체에 대해서 타 업체와 차별성을 보여주며, 가독성·의미성·차별성·내용의 단순성 등을 잘 담고 있는 디자인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그림 9]와 같음



[그림 11] 저작권 OK (2015) 지정마크

#### 4절 저작권 안심 제도 FGI 분석

- 저작권 안심제도 평가위원단은 평가 시 평가의견 및 애로사항으로 판단 범위의 확대 및 제도 방향성 소실로 인한 평가기준의 모호함, 시대의 변화로 인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재정립 등의 다양한 견해가 나타났음

##### (평가위원 A)

“저작권 안심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 불법복제물이 많은 환경이었는데 현재는 아니다.”

“2009년 처음 설계한 사업의 틀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옳은지 방향에 대한 고민 필요해요.”

##### (평가위원 B)

“저작권 안심 사업은 지정사의 윤리적 동참 선언 성격으로 시작된 것이었는데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지정마크화 되면서 판단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복잡해졌어요.”

“저작권 침해 판단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 없는 ‘윤리성’ 과 ‘품질’ 판단까지 일정부분 하게 되면서 평가 시 저작물성까지 판단해야 하거나, 공정이용 문제까지 번지고 있어요.”

##### (평가위원 C)

“예전에는 MP3가 불법인지 아닌지 O, X가 명확했는데 지금은 공정이용의 회색지대가 생기면서 판단이 복잡해졌어요.”

##### (평가위원 D)

“법원도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호원이 법원도 아닌데 저작물성과 공정이용 판단까지 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고 적절성 문제가 있어요.”

“예를들어 ‘티빙’ 같은 경우, 불법업체는 아니지만 음악저작권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고, 성인물을 주로 유통하는 웹툰 사이트의 경우 위해물 판단 문제도 걸려있는 등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평가위원 E)**

“안심 지정평가가 ‘품질 vs 윤리성’, ‘프로세스 vs 품질’, ‘사업자 기준 vs 소비자 기준’ 중 어느 쪽을 평가하는 제도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ISO 심사를 예로 들면, ‘프로세스’ 평가가 있고 ‘품질’ 평가가 있는데 기업은 주로 ‘프로세스’ 평가를, 소비자를 위한 평가로는 ‘품질’ 평가를 하게 돼요.”

“만약에 ‘프로세스’를 평가한다면, 표준의 프로세스를 지키는지(주로 서류 평가)를 평가해 이를 지킨다면 제품(콘텐츠)이 완전할 것이라고 믿어주지만 실제 제품이 완전한지 여부는 검증하지 않아요. 반면에, ‘품질’을 평가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평가하지 않지만 제품의 품질은 보증할 수 있어요.”

“현재 저작권 안심의 문제는 이 ‘프로세스’와 ‘품질’ 평가가 섞여버렸는데 서비스의 전 과정의 저작권을 보게 되어 평가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뿐 아니라 영접 결과 품질 보증의 부담까지 지게 됐어요.”

**(평가위원 F)**

“지정사가 저작권 안심 마크를 저작물성·저작권·공정이용·불법성·위해성 등 모든 부분에 검증을 거쳐 지정 받은 것이라고 왜곡 선전하고 악용할 경우, 추후 지정사 문제 발생 시 기관이 소송 등에 휘말릴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현재 저작권 안심 지정평가표는 이용약관이나 저작권 정책고지, 지정신청사의 저작권 관련 신고내용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실제 운영은 저작권 처리 관련 계약서 사본까지 요청해 검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따라서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지정을 통합해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를 분리해서 운영할지 온라인만 운영할지도 고민 할 필요가 있어요.”

**(평가위원 G)**

“신규 플랫폼에서의 확대 같은 경우 사업 방향성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 없이 메타버스, NFT 등 지정대상을 넓힐 경우 운영 및 평가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NFT의 경우, 무권리자의 민팅인지 확인이 불가능한데 약관만으로 지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우리가 따르고, AI 플랫폼 네이버 번역기(‘말뭉치’ 활용) 역시 데이터 저작권 등 판단이 더 복잡해져요.”

## 5절 현행 저작권 안심 제도(2022)의 문제점 및 한계점 종합

- 2009년 시작된 클린사이트 지정제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저작물을 유통 및 관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를 지정해주는 제도로 사용자들에게 합법 저작물에 대한 경로를 제공하고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식을 향상시켰다는데 의의가 있음
- 2015년 시작된 저작권OK는 정품 콘텐츠 판매 업체 인증 사업으로 국내외 소비자 대상의 불법 복제물 판매에 대한 대응으로 저작권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의의가 있음
- 현 저작권 안심제도(2022)는 온라인 중심의 클린사이트 지정제도와 오프라인 중심의 저작권OK가 합쳐진 형태로 캠페인성인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대두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현재 이용자의 저작권 인식수준 향상 및 급변하는 콘텐츠 유통환경에 따라 운영방침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지며, 지정제도의 정체성이 모호해져 실용성 축소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문제점 및 한계점을 아래와 같이 4가지 측면 ‘저작권 안심제도 평가기준, 정체성, 온-오프라인 운영 방안, 사후관리’에서 분석함

### 1. 저작권 안심 제도의 평가기준 모호

- 정품 지정에 대한 평가 시 평가 방법의 방향이 품질성인지 윤리성인지 명확하지 않아 평가위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저작권 안심 평가가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 만큼 다른 평가와 달리 기준에 대한 판단의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따라서 저작권 지정제도의 평가 방향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임

### 2. 저작권 안심 제도의 정체성 혼란

- 현 지정 마크의 디자인이 ‘저작권 안심’으로 명기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바라볼 때 마크의 의미가 캠페인성이 아닌 품질 지정으로 오해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가 정부에서 운영 및 부여하는 제도인 만큼 정부인정마크라는 신뢰성 및 공증성에 있어서 책임감과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음
-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는 과거 클린사이트와 저작권 OK가 합쳐진 결과물로 현재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확실한 방향성이 요구됨
- 저작권 관련 잡음이 존재하지 않는 서점 등을 저작권 안심사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저작권 안심제도의 정체성에 혼란을 만든다는 의견이 있음

### 3. 오프라인 지정 실효성에 대한 의문

- 현재 디지털 시장의 확대 및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시장의 증가로 인하여 불법 복

제 및 유통 등 저작권 관련 문제들이 온라인 위주로 발생하고 있음

- 평가위원들의 의견 중 하나로 초기 저작권 안심제도 지정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오프라인에 대한 불법 복제물이 많았지만 현재는 오프라인 콘텐츠의 감소로 인하여 불법 복제물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저작물을 유통 및 판매하는 업체들 또한 오프라인 시장보다는 온라인 시장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음
- 처음 설계한 사업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존재함
- 따라서, 오프라인 콘텐츠의 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온라인만 단독 운영하는 것에 비하여 어떤 측면에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4.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어려움

- 초반에는 지정 업체의 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현재는 초기 운영 방식을 수정하여 지정된 업체들에 대해 충실하고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
- 지금 오프라인의 경우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인력 부족으로 1년에 10%이내의 샘플링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있음
-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인력과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지정사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6절 저작권 안심 제도 개선 방향성 설정

#### 1. 저작권 안심 제도 개선 방향성 제안

- 위에서 분석한 저작권 안심제도의 문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Plan A, B, C, D 4가지 방향성을 설정함
-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 운영 여부와 윤리성 및 품질성 위주의 방향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 후 가장 효율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구분은 [그림 12]과 같음

구분	윤리성	품질성
온/오프라인 동시 운영	Plan A	Plan B
온라인 단독 운영	Plan C	Plan D

[그림 12]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 개선방향 설정

## 가. Plan A : 윤리성 기반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운영

### (1) 장점

- 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초기 저작권 안심 제도(저작권 OK(2015))의 지정 목표에 부합함
- ② 온라인만 운영하는 방식과 달리 오프라인에서 지정현판을 매장에 부착함으로써 저작권 안심제도에 대한 시각적인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
- ③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상호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가능함
- ④ 또한, 개방형 중심의 저작권 안심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로 운영되며 지정절차 및 기준이 보다 덜 엄격하여 신청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낮음
- ⑤ Plan A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와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 없이 부족한 부분만 개선하면 된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임
- ⑥ 2009년부터 진행되고 있던 제도인 만큼 이제는 인지도 측면보다는 지속성 위주로 운영하며 윤리성 및 개방형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다양해진 신규 플랫폼에 대해서도 대응하기 수월함

### (2) 단점

- 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별도로 존재하던 사업이 합쳐진 평가기준으로 방향성 및 기준이 모호함
- ② 저작권 안심 제도를 윤리성 중심으로 할 경우 캠페인성이 강하고 활용도가 낮아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추가 발생함
- ③ 진입장벽이 낮아서 무분별하게 다수의 마크가 발급될 수 있으며, 정부 발급 지정마크이기 때문에 사후 문제 발생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
- ④ 또한, IT 기술 및 디지털 콘텐츠의 확대로 불법 유통 또한 온라인 플랫폼 위주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오프라인에 대한 저작권 안심제도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존재함

## 나. Plan B : 품질성 기반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운영

### (1) 장점

- ① 품질성 지정제도는 제품 우수성과 차별성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작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센티브가 많이 요구되지 않음
- ② 품질 평가는 평가기준이 까다롭게 진행되어서 지정을 주는 만큼 공신력이나 신뢰성을 지정 받을 확률이 높음
- ③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관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의 저작권 안심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측면에서도 좋은 예시를 보여줄 수 있음

### (2) 단점

- ① 저작권 안심 제도는 콘텐츠 산업이라는 특성상 정품 콘텐츠와 불법 콘텐츠 간

- 제품의 품질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려움
- ② 품질성 평가에서는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보다는 결과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③ 초기 만들어진 취지가 윤리성 측면이었던 만큼 현재 만들어진 기준으로는 품질 평가를 하기 어려우며 전면 개편이 필요함
  - ④ 품질 평가 및 유지에 대한 사후 관리 등 보다 전문적인 판단과 저작물들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전문가 섭외가 필요함
  - 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특히 오프라인의 현장 점검과 같은 경우는 시간 및 장소의 제한이 발생함

#### 다. Plan C : 윤리성 기반 온라인 운영

##### (1) 장점

- ① 오프라인에 투입되었던 사후관리 인력 축소로 인한 비용 및 시간 절감이 가능함
- ② 사후관리 시 현장조사와는 달리 온라인 모니터링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적음
- ③ 윤리성(캠페인성)으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들의 저작권 안심 제도 접근에 대한 부담감이 적고 진입장벽이 낮음
- ④ 주목적을 캠페인 및 홍보에 두고 운영함으로써 업체들의 예방적,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참여가 가능함
- ⑤ 광범위한 대상이나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지역적 혹은 저작물 대상에 따른 한계가 있는 반면에 온라인 위주의 저작권 안심 지정은 한계가 없음

##### (2) 단점

- ① 온라인에만 지정 마크를 부착 시 오프라인 매장의 마크에 대한 시각적 홍보효과가 축소되기 때문에 인지도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② 오프라인에 비하여 온라인 및 윤리성 중심의 지정제도는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무분별한 지정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모니터링)이 필요함
- ③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도화된 온라인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④ 저작권 안심 제도의 목표에 다소 반할 수 있으며,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던 저작권 안심 제도 철회 시 예상치 못한 반발과 저작권 안심 제도의 신뢰도 하락이 우려됨

#### 라. Plan D : 품질성 기반 온라인 운영

##### (1) 장점

- ① 품질성 중심의 평가는 평가 기준이 뚜렷하기 때문에 기존 지정 시 평가위원들의 고민을 줄일 수 있음
- ② 까다로운 평가 기준을 넘어야만 지정되는 만큼 공신력이나 신뢰성을 지정 받을 확률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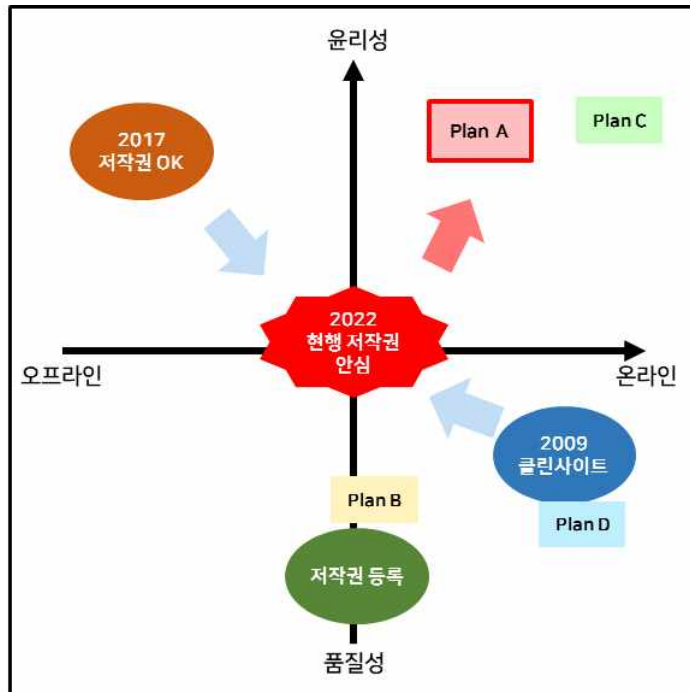
- ③ 이러한 공신력이나 신뢰성, 우수성을 기반으로 품질성 중심의 저작권 안심제도를 통하여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저작권 보호 환경에 기여함
- ④ 품질성 중심의 저작권 안심 지정을 통해 국내외 저작물 관련 유통 및 거래에 있어서 시장 진입 용이성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2) 단점

- ①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보다는 결과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② 품질성 중심의 제도는 폐쇄형이기 때문에 업체들의 신청에 있어서 기준이 높아서 이에 따른 부담감이 발생할 수 있음
- ③ 품질성 중심의 제도는 지정에 따른 시간, 예산(심사비용) 등의 운영에 있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2. 저작권 안심 제도의 개선 방향 도출

- 제시한 4가지 Plan을 2차원 차트로 표기하면 [그림 13]과 같으며 각각 2015년, 2022년의 저작권 안심제도의 위치는 다음과 같음
- 초기 ‘저작권 안심 제도(저작권OK(2017))’의 위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 운영하면서 윤리성 위주로 평가하는 방향이었음
- 그러나 현행 ‘저작권 안심 제도(2022)’는 윤리성/품질성, 온라인/오프라인의 명확한 포지션을 차지하지 못하고 정체성에 혼란을 가지고 있음



[그림 13] 저작권 안심 제도 개선방향 도출

**가. Plan A : 윤리성 기반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운영**

- Plan A는 초기 저작권 OK와 현행 저작권 안심의 균형점으로 윤리성 기반 캠페인을 중심으로 온라인 중심의 위치에 있음
- [그림 13]과 같이 현재 저작권 안심제도에서 윤리성 기반의 방향성이 개선된다면 Plan A에 가장 유사함

**나. Plan B : 품질성 기반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운영**

- Plan B의 경우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지정 제도와 비슷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윤리성 기반의 방향을 품질성으로 바꾼다면 위에서 소비자를 위주로 한 평가가 가능해지며 공신력이나 신뢰성을 지정 받을 확률이 높아지며 Plan B에 가까워짐

**다. Plan C : 윤리성 기반 온라인 운영**

- Plan C의 경우 Plan A와 비슷하지만 오프라인을 배제하고 온라인만을 선택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음
- 최근 디지털 시대 전환으로 온라인 플랫폼들의 확대로 인해 최근 일어난 저작권 불법 복제 사건은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 및 인력 측면에서는 온라인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라. Plan D: 품질성 기반 온라인 운영**

- Plan D의 경우 사양된 클린사이트와 비슷한 포지셔닝의 제도로 매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고려됨
- 클린사이트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만 운영하던 제도이지만 지정하는 실적에 일부 치중된 사업으로 저작권 OK와 통합되면서 사라짐

**3. 저작권 안심 제도 개선 방향 설정 종합의견**

-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안한 Plan A,B,C,D 4가지 방향 중 Plan A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윤리성 위주로 가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대신 평가기준 및 사후관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지정제도라는 인식보다는 캠페인성이라는 느낌으로 ‘사랑의 열매’와 유사하게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율적임
- 저작권 안심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예방적, 선제적 의미에서 저작권 침해 전에 미리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통해 정품콘텐츠 유통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중심으로 지속되어야 함
- 위 3절에서의 저작권 안심제도의 문제점과 4절에서의 Plan A, B, C, D 장단점 분석을 토대로 제안하고자 하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 가. 저작권 안심 제도의 정체성 확립

- 기술의 혁신 및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기 저작권 안심제도의 지정사업의 방향은 평가기준 및 운영방식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여 정체성 확립이 필요함
- 위 3절에서 분석한 문제점과 각 Plan별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저작권 안심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은 윤리성 기반으로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윤리성 기반의 제도 설정은 저작물의 품질을 평가하기보다는 정품 저작물 유통 및 이용의 인식 향상을 목표를 두고자 함
- 저작권 안심제도 방향성은 윤리성 및 캠페인성을 기반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저작권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나. 윤리성 중심의 평가기준 설정

- 저작권 안심 지정 사업의 정체성 확립을 토대로 윤리성 기반의 평가기준 재정립이 필요함
- 현재 저작권 안심의 평가기준은 품질성이나 윤리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기준 자체가 클린사이트와 저작권 OK가 합쳐진 평가기준으로 일관성이 부족함
- 따라서 캠페인성을 기반으로 적합성, 관리 및 이용에 따라 일정 수준의 조건만 제시하여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이 설정되어야 함

#### 다. 온라인 중심의 온/오프라인 동시 운영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시장의 확대 및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의 증가로 인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 운영하지만 온라인 중심의 지정 사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소셜 미디어, 1인 미디어와 같은 개인이 운영하는 콘텐츠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반 이용자들의 저작권 인식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저작권 안심 지정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지정마크 및 지정현판 등의 시각적인 노출이 필요함
-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오프라인 콘텐츠의 홍보 효과를 통하여 저작권 안심 지정사업에 대한 인식 증가와 저작권 자체의 관심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함
- 오프라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캠페인성으로 함께 운영해나가는 것이 저작권 안심 지정사업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임

#### 라. 사후관리 방안 효율화

- 윤리성 기반의 캠페인성 지정 제도일 경우 지정 대상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두 직접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함



- 현행 샘플링을 통한 조사를 기초로 신고센터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재지정 기간 단축 등 추가 사후 관리 방안이 요구됨

마. 제품 지정에 대한 확대 가능성

- 저작권 안심제도가 캠페인성 지정제도에 대한 방향성이 확립된다면 진입장벽도 낮고, 신청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서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함
- 국내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다양한 정보전달 매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으며 캠페인이라는 이미지는 기업에서도 신청에 있어서 보다 부담감이 적어 제품 지정에 대한 확대의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소비자 중심의 지정제도로 개선된다면 시장 환경 및 상황의 변화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음

## 4장 저작권 안심 제도 개선 방안 도출

본 4장에서는 <표 9>와 같이 국내 지정 관련 유사 제도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함

### 1절 관련 유사 제도 현황 조사 및 비교분석

- 다음 <표 9>와 같이 관련 국내 유사 제도 현황 조사를 지정 유형에 따라 품질성 중심의 인증제도와 윤리성 중심의 인증제도로 구분함
- 품질성 중심의 인증제도에는 KC인증, KS인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한국관광 품질인증 등이 존재함
- 윤리성 중심의 인증제도에는 환경성적표지, 착한가격업소, 소D비자 중심경영 인증,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 등이 존재함
- 지정 유형에 따른 제도 조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표 9> 국내 유사 제도 분류

구분	지정명칭	주관부처	지정기관	사이트
품질성 중심의 인증 제도	KC인증	산업통상지원부	국가기술표준원	<a href="https://www.kats.go.kr/">https://www.kats.go.kr/</a>
	KS인증		한국표준협회	<a href="https://www.ksa.or.kr/">https://www.ksa.or.kr/</a>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 href="https://www.naqs.go.kr/">https://www.naqs.go.kr/</a>
	한국관광 품질인증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a href="https://kto.visitkorea.or.kr/">https://kto.visitkorea.or.kr/</a>
윤리성 중심의 인증 제도	환경성적표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a href="https://www.greenproduct.go.kr/epd/">https://www.greenproduct.go.kr/epd/</a>
	저작권 안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a href="https://www.kcopa.or.kr/">https://www.kcopa.or.kr/</a>
	착한가격업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a href="https://goodprice.go.kr/">https://goodprice.go.kr/</a>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a href="https://www.ftc.go.kr/">https://www.ftc.go.kr/</a>

\* KC지정은 지정분야에 따라 산업통상지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8개 부처에서 부여함

## 1. 품질성 중심의 관련 유사 제도

### 가. KC인증

#### (1) 제도개요 및 소개

- 똑같은 ‘제품안전’이라는 목적 하에 각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거나, 인증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아짐에 따라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3개의 법정 의무 지정 마크를 국가통합인증 마크인 KC마크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sup>20)</sup>하고 있음
- 인증대상으로는 자동차, 가전제품, 유모차, 전화기 등 730여 개의 품목이 있으며, 공산품의 품질을 표준 규격으로 평가해 일정수준에 이른 제품에만 KC마크를 부여함<sup>21)</sup>

#### (2) 인증절차 및 평가기준

- 인증절차는 인증 신청서 제출, 신청서 검토, 공장심사, 제품심사, 결과 및 인증서 발급, 정기심사로 구성됨
- 평가기준은 대상 제품의 품목 또는 기능에 따라 ‘안전인증’ 과 ‘전자과인증’ 으로 구분되며,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제조하여 한국에서 유통 및 판매하려는 지정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 공장심사의 결과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제품시험은 지정 대상 기자재에 대하여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조 및 검사설비, 원자재 및 공정검사, 제품검사를 통해 평가 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처리함<sup>22)</sup>

#### (3) 사후관리

-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군인 안전인증 대상에 대하여 정기심사(제품심사, 공장심사) 연 1회 실시함<sup>23)</sup>

#### (4) 혜택 및 지원

-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 인증업체 홍보, 기업 이미지 향상 등의 혜택을 지원 받고 있음<sup>24)</sup>

20) 김재만, 김광수. “KC지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효과: 공산품을 중심으로.”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7.3 (2015): 307-317.

21) ICC, “KC지정”, <http://icccert.co.kr/kc-2>.

22) Intertek. “kc지정 가이드”, [http://www.intertek.co.kr/wp-content/uploads/2018/02/KC\\_guideline\\_kr\\_201802.pdf](http://www.intertek.co.kr/wp-content/uploads/2018/02/KC_guideline_kr_201802.pdf), 2022.

23) Intertek. “kc지정 가이드”, [http://www.intertek.co.kr/wp-content/uploads/2018/02/KC\\_guideline\\_kr\\_201802.pdf](http://www.intertek.co.kr/wp-content/uploads/2018/02/KC_guideline_kr_201802.pdf), 2022.

24) 국제품질기술원, “전기용품 안전(KC)지정”, [https://www.iso-korea.co.kr/?page\\_id=371](https://www.iso-korea.co.kr/?page_id=371).



[그림 14] KC인증 절차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기업에게는 경쟁력을  
**국가통합인증마크**



[그림 15] KC인증 마크

## 나. KS인증

### (1) 제도개요 및 소개

- 국가가 정해놓은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기업에 대하여 그 품질을 국가가 보증하겠다는 의사 표시로서, 지속적으로 품질개선과 생산 능력을 향상시켜 우수 공산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음<sup>25)</sup>
- 인증 대상은 크게 ‘제품’ 과 ‘서비스’ 로 구분할 수 있으며, 품질을 식별하기 쉽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독과점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 되는 경우<sup>26)</sup> 인증 대상이 됨

### (2) 인증절차 및 평가기준

- 인증절차는 KS수준 이상의 제품, 가공기술, 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생산 및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공장심사, 제품심사(서비스 지정의 경우 사업장 심사, 서비스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때 적용되는 기준을 ‘KS인증심사기준’ 라고 함<sup>27)</sup>
- ‘KS인증심사기준’ 제품 및 가공기술 인증의 경우 6개의 심사항목 즉, 표준화일반,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6개 항목 100점 만점 중 80% 이상의 점수를 득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음<sup>28)</sup>

25) 전재희, “KS표시 지정제도 선진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2001).

26) 고대승, 이동욱, “국내 지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 21.

27) “e나라 표준지정, “KS지정 심사진행가이드”,  
<https://standard.go.kr/KSCI/crtfcguidedoc/getCrtfcAcqGuideDocPopup.do>

28) 고대승, 이동욱, “국내 지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 25.

(3) 사후관리

- KS표시 인증을 받은 공장에 대해서 매 5년(또는 1년) 주기로 정기심사를 심사하며, 다만 매 1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심사(제품심사)의 98개 품목은 인증기관의 주관 하에 인증심사기관 및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것을 원칙<sup>29)</sup>으로 하고 있음

(4) 혜택 및 지원

- 국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물품을 구매 시 KS지정 제품 우선구매, 입찰 계약의 특례, 검사.형식.승인 등의 면제와 같은 혜택 및 지원을 받음<sup>30)</sup>



[그림 16] KS인증 절차



[그림 17] KS인증 마크

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1) 제도개요 및 소개

-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은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필요성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을 갖춘 농산물을 지정하는 GAP지정을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GAP지정 농산물은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지칭<sup>31)</sup>
- 인증대상은 농산물 생산농가 및 생산자 등이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 및 관리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함<sup>32)</sup>

29) 전재희, “KS표시 지정제도 선진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9, (2001).

30) 한국표준협회, “KS지정제도 개요”, [https://ks-pbi.ksa.or.kr/ksa\\_kr/959/subview.do](https://ks-pbi.ksa.or.kr/ksa_kr/959/subview.do), 2022.7.18.

31) 김성태, 유도일, “GAP지정 학교급식 농산물 선호도 분석: 충북지역 영양사의 급식용 사과 소비를 중심으로” 농업경제연구58, no.4, (2017), 21-46.

3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우수관리(GAP)”,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do>.

(2) 인증절차 및 평가기준

- 인증절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 받은 전문인증기관 신청접수 후 서면심사, 현장심사(토양 및 수질분석, 잔류농약검사 등), 적합 시 인증서 발급의 절차를 걸쳐 실시하고 있음
- 평가기준은 현장심사를 기준으로 하며, 현장을 방문하여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산물 이력 추적, 종자 및 묘목의 선정, 농경지 토양 관리, 비료 및 양분 관리, 물 관리, 작물 보호 및 농약 사용, 수확 작업 및 보관, 수확 후 관리 및 시설, 환경오염 방지 및 농업 생태계 보전, 농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교육 여부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평가항목별 점수제로 평가결과 85점 이상은 적합, 70~84점 기술지원(컨설팅), 69점 이하 부적합으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적합 판정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함<sup>33)</sup>

(3) 사후관리

- 인증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생산과정과 유통 및 판매과정을 조사함<sup>34)</sup>

(4) 혜택 및 지원

- 우리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도 동등한 수준의 GAP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명 거래에 의한 품질관리도 용이해짐, 또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 장비 매입 등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



[그림 18]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절차



[그림 19] GAP인증 마크

33) 국가법령정보센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음식점위생등급지정및운영관리규정/\(2022-25,20220331\)](https://www.law.go.kr/행정규칙/음식점위생등급지정및운영관리규정/(2022-25,20220331)).

34) 농산물우수관리 및 이력추적관리의 이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7.

라. 한국관광 품질인증

(1) 제도개요 및 소개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 관광분야의 인증제도가 17년 2월 기준 84개에 달하여 관광객에게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렵고, 인증업소의 홍보 및 체계적 지원도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관광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관광분야의 인증제도로서, 숙박업(일반, 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 일반음식점업을 대상으로 함<sup>35)</sup>

(2) 인증절차 및 평가기준

- 인증절차는 신청 접수 후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합 시 인증서 발급 절차를 걸쳐 실시하고 있음
- 평가기준은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확보했는지,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했는지,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관광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평가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만 인증을 하고 있음<sup>36)</sup>

(3) 사후관리

- 서비스 모니터링, 품질관리 컨설팅리포트 제작<sup>37)</sup>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인증 품질 유지 및 개선을 유지하고 있음

(4) 혜택 및 지원

- 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 서비스 역량 강화(온라인 서비스 교육과정 개발, 서비스 교육, 서비스 매뉴얼 지원), 소방안전 및 위생 관리 역량 강화(소방안전 진단 및 교육, 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 사후관리 강화(서비스 모니터링, 품질관리 컨설팅리포트 제작 등), 홍보 역량 강화(홍보 및 판촉 채널 확대) <sup>38)</sup>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림 20] 한국관광 품질인증 절차



[그림 21] 한국관광 품질인증 마크

35) 오수진, “[관광]문체부, 국가차원의 ‘한국관광품질지정제’ 시행“, 소비자정책동향no.6, 2018.

36) 김재호, “관광품질 지정제 발전방안.“ 한국관광정책 -.72 (2018): 52-61.

37) 김재호, “관광품질 지정제 발전방안.“ 한국관광정책 -.72 (2018): 52-61.

38) 김재호, “관광품질 지정제 발전방안.“ 한국관광정책 -.72 (2018): 52-61.

## 2. 윤리성 중심의 관련 유사 제도

### 가. 환경성적표지

#### (1) 제도 개요 및 소개

- 탄소발자국이라는 용어 대신 탄소성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2016년 환경성적·탄소성적표지 제도를 환경성적표지 제도로 통합하였으며, 2009년 2월부터 환경부 고시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 주도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환경성적표지제도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인증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임의적인 인증제도임<sup>39)</sup>

#### (2) 인증절차 및 평가기준

- 인증절차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인증기준 적부판단을 위한 시험검사 및 생산현장 확인 또는 검증(제품만 해당),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인증서 발급 절차를 걸쳐 실시하고 있음
- 평가기준은 모든 대상제품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지침과 일반제품, 건축자재 및 에너지사용제품으로 구분되며,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인 원료물질 채취, 제품제조, 유통, 소비 및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규명하고 이러한 물질들이 지구온난화 및 산성화 등과 같은 지구환경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정량화를 통해 환경성 정보를 평가함<sup>40)</sup>

#### (3) 사후관리

-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제도참여기업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의 내용은 환경성적표지의 표시형태 사용의 적정여부 확인, 환경성적표지 무단사용 사례조사 등이 있음<sup>41)</sup>

#### (4) 혜택 및 지원

- 환경성적표지 인증 자재 사용 가점, 조달청 종합낙찰제 선정 평가 시 환경평가 심사항목으로 탄소발자국 배출량 정보 활용, 정부 및 공공기관 포상 추천, 그린카드 제도 연계 및 에코머니 제공, 인증제품 홍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sup>4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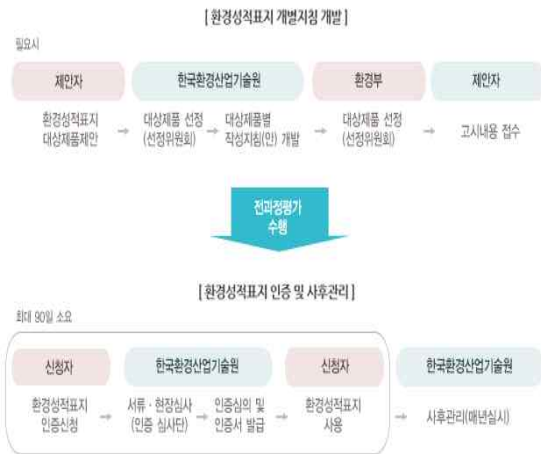
39) 이상훈, “탄소발자국과 탄소성적표지제”, 우리문화신문, <https://www.koya-culture.com/mobile/article.html?no=130396>, 2021.06.03

40)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환경성적표지작성지침/\(2022-155,20220808\)](https://www.law.go.kr/행정규칙/환경성적표지작성지침/(2022-155,20220808))

41) 환경부, “환경성적표지 운영방안”, <https://www.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2192&fileSeq=1>

4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적표지”, <https://www.greenproduct.go.kr/epd/epd/epdIntro05.do>





[그림 22] 환경성적표지 절차

[그림 23] 환경성적표지 마크

## 나. 소비자중심경영인증(CCM)

### (1) 제도 개요 및 소개

-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써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소비자가 원하고, 소비자를 우선시 하는 소비자를 위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지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물품의 제조, 판매 또는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을 하는 사업자가 지정 대상이 됨<sup>43)</sup>

### (2) 인증절차 및 평가기준

- 인증절차는 신청 접수 후, 대상확인, 현장심사,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과통보 및 지정서 발급 절차를 걸쳐 실시하고 있음
- 평가기준은 신규평가와 재평가,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리더십(최고경영자의 리더십, CCM전략, 사회적 가치 실현), CCM체계(조직, 자원, 교육, 문서관리), CCM운영(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불만사전예방, VOC 운영 절차), 성과관리(CCM운영성과, 유지개선), 가점(CCM 상생협력) 총 4개 영역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0점 이상만 인증을 하고 있음<sup>44)</sup>

### (3) 사후관리

- 지속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또한 신규평가를 받은 다음해부터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sup>45)</sup>

43) 양세정, 서인주, and 이성훈. “Everyday Fresh Maeil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사례연구.” 소비자정책 교육연구 9.4 (2013): 159-175.

4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지정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 행정규칙/소비자중심경영(CCM)지정제도운영·심사에관한규정/(2022-3,20220314)

(4) 혜택 및 지원

- 우수기업 포상,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가산점 부여<sup>46)</sup>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그림 24] 소비자중심경영인증(CCM) 절차



[그림 25] CCM인증 마크

다. 착한가격업소

(1) 제도 개요 및 소개

-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도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 등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를 의미함<sup>47)</sup>

(2) 인증절차 및 평가기준

- 착한가격업소의 대상이 되는 업소는 외식업, 이·미용,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체이며, 착한가격업소 지정 절차는 먼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정공고를 하고 희망하는 업소들의 신청을 받으며 그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지정기준에 따라 현지실사평가 및 심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인 지정여부를 판단하여 지정됨
-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평가기준을 활용하며 가격기준 45점, 위생·청결 기준 30점, 서비스 기준 20점, 공공성 기준 5점으로 구성되며, 착한가격업소 선정 가점 기준 또한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표준에 따라 총 가점 10점 중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8점 범위 내 자율적 가점 부여), 중앙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 표창(2점 범위 내에서 가점부여)으로 착한가격업소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협의·조정이 이루어

4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지정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 행정규칙/소비자중심경영(CCM)지정제도운영·심사에관한규정/(2022-3,20220314)

46) 한국소비자원, “CCM지정제도”, <https://www.kca.go.kr/ccm/certSystemOutlineView.do>

47)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격업소안내”, <https://goodprice.go.kr/introduce/store01.do>

지며, 최종적인 지정결과는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결정됨<sup>48)</sup>

(3) 사후관리

-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 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는 모니터링 운영 및 정기 심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함<sup>49)</sup>

(4) 혜택 및 지원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봉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을 제공하며, 기획재정부 물가안정관리 정부포상,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업소 홍보 등의 정책혜택 및 기타혜택을 제공함<sup>50)</sup>



[그림 26] 착한가격업소 지정 절차

[그림 27] 착한가격업소 지정 마크

라. 저작권 안심 지정 제도

(1) 제도 개요 및 소개

-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은 정품 콘텐츠를 판매·유통 이용하는 사업자를 저작권 안심으로 지정하여 합법저작물 판매와 이용을 유도하는 건전한 선순화 저작물 생태계 조성사업임
- 지정 대상으로는 합법 저작물을 유통 및 이용하는 서비스,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 합법 저작물 판매 및 이용 확인 가능한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개시한지 3개월 이상 된 서비스를 저작권 안심 지정 요건으로 함<sup>51)</sup>

(2)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

- 지정절차는 신청, 서류심사, 평가, 지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지정여부 통해 지정확정 및 지정서 발급 절차를 걸쳐 실시하고 있음
- 평가기준은 공통부분(사업자 신고사항)과 온라인(저작권법 및 보호정책 준수, 저작권보호환경, 유해 저작물의 근절) 그리고 오프라인(정품 저작물 유통 및 이용, 관리운영, 소비자 보호)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저작권 안심 지정을 위한 지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정, 조건부 지정, 보류, 미지정으로 결과를 통보함<sup>52)</sup>

48) 조원희, 주혜린, 전미선, “착한가격업소 인증제도 활성화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7(1), 2021, 77-94.

49) 국가법령정보센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중로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1409,20210507\)](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중로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1409,20210507))

50)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격업소 안내”, <https://goodprice.go.kr/introduce/store01.do>

51)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안심”, <https://www.kcopa.or.kr/lay1/S1T356C360/contents.do>,

(3) 사후관리<sup>53)</sup>

- 지정서비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및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4) 혜택 및 지원

- 지정사 및 예비지정사 대상 전문 컨설팅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지정사 및 예비 지정사 대상 무료 교육 제공, 저작권 안심 지정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하고 있음<sup>54)</sup>



[그림 28] 저작권 안심 절차



[그림 29] 저작권 안심 마크

52) 한국저작권보호원, “[붙임3]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운영 매뉴얼(22.3.2.개정)”, 2022.

53)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안심“, <https://www.kcopa.or.kr/lay1/S1T356C360/contents.do>

54)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안심“, <https://www.kcopa.or.kr/lay1/S1T356C360/contents.do>

3. 관련 유사제도 전체현황과 비교분석

<표 10> 관련 유사제도 전체 현황

구분	품질성 중심 관련 유사제도				윤리성 중심 관련 유사제도			
	KC인증	KS인증	농산물 우수관리	한국관광품질인증	환경성적표지	CCM인증	착한가격업소	저작권 안심
지정 마크								
특징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있어 충실함을 전성까지 인증	제품의 품질이 국가 표준 기준에 맞닿는 것을 보증	국산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확보, 거래에 의한 품질관리 용이	한국관광 품질 관리 체계구축, 지정 기준의 표준화를 통한 신뢰성 확보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사용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하고 개선하는지 평가 및 지정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	정품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통사를 통한 저작권 침해 예방
혜택	인증시스템 구축으로 중복 절차에 따른 경제력 부담, 지정 소요 기간 단축	KS 지정제품 우선구매, 입찰계약의 특례, 검사, 형식, 승인 등 면제 지원	시설 및 자동화 장비매입 등 자금지원,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우선적 상장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용 금리우대, 홍보 및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지원	정부포상, 배출량 정보 활용, 제품 홍보 등 지원	정부포상,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가점부여	쓰레기 봉투 지급률, 상하수도 요금, 감면, 업소홍보 등 지원	지정사 및 예비 지정사 대상 전문상담, 교육, 홍보 및 활성화 지원
지정 기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제조 시설비, 원자재 및 공정검사, 제품검사	KS 지정심사기준으로 표준화, 일관성, 자재의 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 등의 6개 심사 항목	농산물우수관리기준으로 농산물 이력 추적, 농경지 토양 관리, 비료 및 양분 관리, 물 관리, 작물 보호 및 농약 사용 등을 평가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확보, 전문인력 확보, 안전관리 등의 기준에 따라 관광 서비스 시설의 품질을 평가	모든 대상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전과정평가(LCA) 채취, 제조, 유통, 소비 및 폐기 등에 따른 수치지량화로서 환경성 정보를 평가	신규평가, 재평가, 대기업,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구분하며, 리더십, CCM체계, CCM운영, 성과관리 총 4개 영역으로 평가	가격기준, 위생청결기준, 서비스기준, 공공성기준에 총 4개의 항목에 따라 평가	공통사항과 온라인(저작권법 보호정책 준수 등) 그리고 오프라인(정품 저작물 유통 및 이용 등) 영역으로 평가
사후 관리	매년 1회 정기 검사 및 자체 검사 실시	매 3년(서비스의 경우 매 2년) 정기심사, 공장심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매년 1회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 조사 및 점검, 유통 및 판매과정 조사	서비스 모니터링, 품질관리 컨설팅 리포트 제작	기준 준수 여부 확인과 무단사용 사례 조사로서 매년 정기조사 및 수시 조사	신규평가를 받은 다음해부터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등을 실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1회 이상 검사	매월 1회 정기 모니터링, 연 1회 현장점검 등
지정 수수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지정 심사	공장심사 제품심사	공장심사 제품심사	서면심사 현장심사	서면심사 현장심사	서면심사 현장심사	서면심사 현장심사	서면심사 현장심사	서류심사 평가
유효 기간	5년	3년	2년	3년	3년	2년	2년	2년
법정의무/임의	의무	임의	임의	임의	임의	임의	임의	임의
운영 주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행정안전부	한국저작권보호원
시행 년도	2009년	1989년	2006년	2016년	2019년	2007년	2017년	2009년

- 관련 국내 유사 제도 전체현황을 살펴보면 지정유형에 따라 제품, 서비스 등의 품질이나 안전을 확보하려는 품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윤리성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표 10>과 같음
- 관련 유사 제도와 저작권 안심 지정 제도를 제도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지정 유형에 따른 지정 목적, 지정심사의 전문성, 홍보 및 지정 브랜드 인지도, 지속가능한 제도를 위한 주요 혜택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아래와 같음

#### 가. 제도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유무

- 제품 등의 품질이나 안전을 확보하려는 품질성 중심의 지정제도, 특히 안전지정과 관련된 지정제도의 경우 다른 지정제도보다 엄격한 평가기준과 지정 효과 등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고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정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음
- 반면에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윤리성 중심의 지정제도인 저작권 안심의 경우, 지정 기준이나 효과 등의 제도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함

#### 나. 지정유형에 따른 지정 목적

- 지정유형에 따라 그 형태나 차이가 있으나 품질성 중심의 지정제도와 윤리성 중심의 지정제도 모두 유통 및 판매 또는 소비에 있어서 효율성 제공과 신뢰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같음
- 다만 품질성 중심의 지정제도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의 우수성, 정보의 비대칭성 감소가 목적임
- 윤리성 중심의 지정제도는 품질 중심의 지정제도 보다는 신뢰성 확보와 윤리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 다. 지정심사의 전문성

- 품질 중심의 지정제도는 전문 평가단, 심사위원회 자격 부여, 적격 검증 등의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 반면에 윤리성 중심의 지정제도인 저작권 안심은 심사전문성이 부족
- 즉, 전문화된 평가기준, 심사 매뉴얼, 교육 등이 없이 심사가 진행되어 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 그리고 공정성 결여됨

#### 라. 홍보 및 지정 브랜드 인지도

- 국가 정책 주도하에 운영되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품질 중심의 지정제도는 강제 의 무지정에서 점차 임의인증 범위로 넓혀가며 실용적인 혜택과 체계적인 홍보를 통한 기업에서 소비자로 인식을 제고하고 인지도를 넓힘
- 반면에 윤리성 중심의 지정제도인 저작권 안심은 캠페인성 지정에 따른 낮은 참여율과 지정 브랜드로서의 홍보 및 마케팅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마.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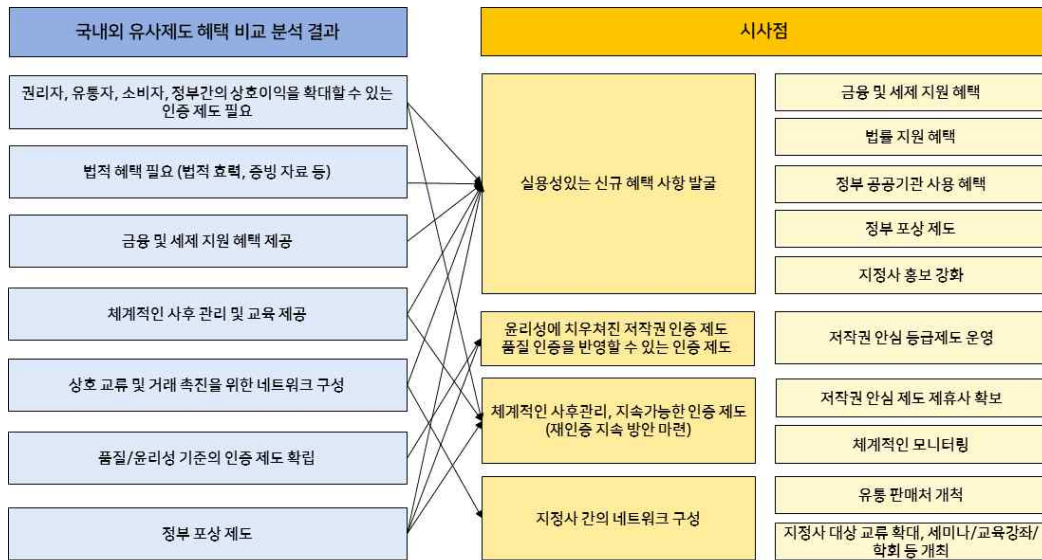
- 품질성 중심의 지정제도 지정절차는 품질수준과 생산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품심사, 공장심사, 현장심사로 구성됨
- 평가기준은 제품의 안정성이나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품질성 중심의 지정제도 자체 평가 기준 정량적 평가로 심사함
- 윤리성 중심의 지정제도 지정 절차는 지정 대상의 목적이 윤리적으로 부합하는지 혹은 적합한지에 따라 서면심사, 현장심사로 구성됨
- 또한 평가기준은 윤리성 중심의 자체 평가기준과 윤리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혹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적·부합의 정성적 평가로 심사함

바. 사후 관리 방법

- 품질성 중심의 지정제도는 품질수준과 생산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기심사를 통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짐
- 특히 자체 기준에 따른 준수 여부 조사 및 점검, 현장에서의 유통 및 판매과정 조사를 실시함
- 윤리성 중심의 지정제도는 윤리적 가치 제공 혹은 준수 여부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통해 사후관리가 이뤄짐
- 특히 자체 기준에 따른 적합성 조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 역량강화 교육 등의 사후관리가 실시됨

사. 지속가능한 제도를 위한 주요 혜택

- 품질성 중심의 지정 제도 중 마크 발급 자체가 의무이거나 정상적인 영리활동을 위해서 거의 필수적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마크 그 자체로써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고 마케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을 대부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그 외 품질성 중심의 지정 제도는 홍보, 대출우대, 자금지원, 우수 지정 업체에 대한 정부포상,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구매 등의 금전적 혜택과 행정적 혜택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으로서 활용되고 있음
- 윤리성 중심의 지정 제도는 캠페인성 윤리적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 홍보, 전문 컨설팅,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등의 혜택을 많이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지속가능한 제도를 위해서는 [그림 30]과 같이 다양한 신규 혜택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림 30] 유사 제도 혜택 비교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2절 저작권 안심 제도 유형별 운영 방안

- 2절에서는 윤리성, 품질성, 온라인, 오프라인의 각 운영 특징에 따라 대상, 평가항목, 평가강도, 평가기간, 제출서류,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유형별 운영방안을 제시함
- Plan(유형)별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11>과 같음

<표 11> Plan(유형)별 운영방안

구분	Plan A	Plan B	Plan C	Plan D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윤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품질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윤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품질성</li> </ul>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사업자등록증 보유자</li> <li>● 합법 저작물 유통·판매·이용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사업자등록증 보유자</li> <li>● 합법 저작물 유통·판매·이용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사업자등록증 보유자</li> <li>● 합법 저작물 유통·판매·이용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사업자등록증 보유자</li> <li>● 합법 저작물 유통·판매·이용하는 자</li> </ul>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합성</li> <li>● 관리 및 이용</li> <li>●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증명</li> <li>● 지정사 보호 환경 조성</li> <li>● 관리 및 이용</li> <li>● 품질 정보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합성</li> <li>● 관리 및 이용</li> <li>●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증명</li> <li>● 지정사 보호 환경 조성</li> <li>● 관리 및 이용</li> <li>● 품질 정보제공</li> </ul>
평가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대(정성적 평가)</li> <li>● 일정 기준 만족 시 즉시 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격(정량적 평가)</li> <li>● 평가 기준 만족 및 평가 위원 의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대(정성적 평가)</li> <li>● 일정 기준 만족 시 즉시 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격(정량적 평가)</li> <li>● 평가 기준 만족 및 평가 위원 의결</li> </ul>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사업자등록증</li> <li>● 지정신청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리지정서</li> <li>● 이용허락지정서</li> <li>● 국내사업자등록증</li> <li>● 신분증명서</li> <li>● 지정신청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사업자등록증</li> <li>● 지정신청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리지정서</li> <li>● 이용허락지정서</li> <li>● 국내사업자등록증</li> <li>● 신분증명서</li> <li>● 지정신청서</li> </ul>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심사</li> <li>● 현장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심사</li> <li>● 현장점검</li> <li>● 품질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심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심사</li> <li>● 품질점검</li> </ul>

## 1. Plan A : 윤리성 기반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운영

### 가. 특징

- 온라인과 오프라인 콘텐츠를 동시에 진행하며, 윤리성 기반으로 정성평가를 통해 적합 여부에 따른 평가방식으로 운영되는 저작권 안심제도를 목표로 함

### 나. 대상

- Plan A의 운영 대상으로는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법 저작물을 유통, 판매 및 이용하는 모든 신청자를 목표로 함

### 다. 평가항목

- 저작권 안심제도의 평가항목으로는 적합성, 관리 및 이용, 이용자 보호 환경을 기준으로 평가함
- 적합성은 제출한 신청인의 적격여부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일치 여부를 통하여 적합성을 판단함
- 관리 및 이용은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가능성 및 관리, 이용 지침에 대해 잘 이행하고 있는지 혹은 준수 여부에 따라 평가함
-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항목은 유해 저작물로부터의 보호 환경 조성과 온·오프라인 저작물 유통 사이트 및 업체 내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나 법령 위반으로부터 보호 정책이 구비되어있는지에 따라 심사함

### 라. 평가강도

- 윤리성 기반의 정성적 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 만족 시 즉시 지정등록 함
- 적합 여부에 따른 일정 기준 만족 시 단시간 안에 등록
- 심사위원 축소에 따른 지정에 대한 속도성 증가

### 마. 제출서류

- 평가 신청에 있어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합법저작물을 판매·유통·이용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및 기관 그리고 개인의 국내 사업자등록증과 저작권 안심 지정 신청서가 있음

### 바. 사후관리

- 사후관리로는 윤리성이라는 특성에 따라 온라인은 매 3개월 1회 모니터링의 정기 심사, 오프라인은 연 1회 현장점검 및 불시평가를 통하여 실시함
- 모니터링 결과 분석에 따라 자료 제공과 개선방안 제시함
- 또한,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저작권 보호원에서 제공한 교육 이수 시 재지정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함

## 2. Plan B: 품질성 기반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운영

### 가. 특징

- 온라인과 오프라인 콘텐츠를 동시에 진행하며, 품질성 기반으로 정량평가를 통해 결과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운영되는 저작권 안심제도를 목표로 함

### 나. 대상

- Plan B의 운영 대상으로는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법 저작물을 유통, 판매 및 이용하는 모든 신청자를 목표로 함

### 다. 평가항목

- 저작권 안심제도의 평가항목으로는 신분증명, 관리 및 이용, 지정사 보호 환경 조성, 품질제공, 유통체계를 기준으로 평가함
- 신분지정은 제출한 신청인의 적격여부와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내용일치 여부를 통하여 신분지정을 판단함
- 관리 및 이용은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가능성 및 관리, 이용 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에 따라 평가함
- 지정사 보호 환경 조성항목은 유해 저작물로부터의 보호환경 조성과 온·오프라인 저작물 유통 사이트 및 업체 내 지정사 보호 정책이 구비되어있는지에 따라 심사함
- 품질 제공에서는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저작물에 대하여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보유 여부와 정품 저작물 유통 및 이용 환경 조성과 정보 제공 여부에 따라 평가함

### 라. 평가강도

- 품질성 기반의 정량평가를 통해 평가 기준 만족 및 평가 위원 의결에 따라 지정, 미지정으로 결정함
- 평가 기준 만족 및 평가 위원 의결을 통해 일정 심사기간이 소요됨
- 심사위원 외 별도의 각 품질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위원 및 전문가 필요함

### 마. 제출서류

- 평가 신청에 있어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권리 지정서가 요구됨
- 또한, 저작권 안심제도를 신청하는 지정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이용허락지정서가 추가로 필요함

### 바. 사후관리

- 사후관리로는 품질성이라는 특성에 따라 온라인은 매월 1회 모니터링의 정기심사, 오프라인은 3개월에 1회 현장점검 및 불시평가를 통하여 실시함
- 또한,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저작권 보호원에서 제공한 교육 이수 시 재지정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함
- 품질점검을 통해 불법저작물 유통 위반 여부 등의 품질 환경을 점검함

### 3. Plan C: 윤리성 기반 온라인 운영

#### 가. 특징

- 온라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윤리성 기반으로 적합 여부에 따른 평가방식으로 운영되는 저작권 안심제도를 목표로 함

#### 나. 대상

- Plan C의 운영 대상으로는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법 저작물을 유통, 판매 및 이용하는 모든 신청자를 목표로 함

#### 다. 평가항목

- 저작권 안심제도의 평가항목으로는 적합성, 관리 및 이용, 이용자 보호 환경을 기준으로 평가함
- 적합성은 제출한 신청인의 적격여부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일치 여부를 통하여 적합성을 판단함
- 관리 및 이용은 온라인상에서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가능성 및 관리, 이용 지침에 대해 잘 이행하고 있는지 혹은 준수 여부에 따라 평가함
-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항목은 유해 저작물로부터의 보호 환경 조성과 온라인 저작물 유통 사이트 및 업체 내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나 법령 위반으로부터 보호 정책이 구비되어있는지에 따라 심사함

#### 라. 평가강도

- 윤리성 기반의 정성적 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 만족 시 즉시 지정등록 함
- 적합 여부에 따른 일정 기준 만족 시 단시간 안에 등록
- 심사위원 축소에 따른 지정에 대한 속도성 증가

#### 마. 제출서류

- 평가 신청에 있어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합법저작물을 판매·유통·이용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및 기관 그리고 개인의 국내 사업자등록증과 저작권 안심 지정 신청서가 있음

#### 바. 사후관리

- 사후관리로는 윤리성이라는 특성에 따라 온라인에 대해서 모니터링심사로 매 3개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함
- 모니터링 결과 분석에 따라 자료 제공과 개선방안 제시함
- 또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원에서 제공한 교육 이수시 재지정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함

#### 4. Plan D: 품질성 기반 온라인 운영

##### 가. 특징

- 온라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품질성 기반으로 정량평가를 통해 결과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운영되는 저작권 안심제도를 목표로 함

##### 나. 대상

- Plan D의 운영 대상으로는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법 저작물을 유통, 판매 및 이용하는 모든 신청자를 목표로 함

##### 다. 평가항목

- 저작권 안심제도의 평가항목으로는 신분증명, 정책 준수, 관리 및 이용, 지정사 보호 환경 조성, 품질제공, 유통체계를 기준으로 평가함
- 신분지정은 제출한 신청인의 적격여부와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내용일치 여부를 통하여 신분지정을 판단함
- 관리 및 이용은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가능성 및 관리, 이용 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에 따라 평가함
- 지정사 보호 환경 조성항목은 유해 저작물로부터의 보호환경 조성과 온, 오프라인 저작물 유통 사이트 및 업체 내 지정사 보호 정책이 구비되어있는지에 따라 심사함
- 품질 제공에서는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저작물에 대하여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보유 여부와 정품 저작물 유통 및 이용 환경 조성과 정보 제공 여부에 따라 평가함

##### 라. 평가강도

- 품질성 기반의 정량평가를 통해 평가 기준 만족 및 평가 위원 의결에 따라 지정, 미지정으로 결정함
- 평가 기준 만족 및 평가 위원 의결을 통해 일정 심사기간이 소요됨
- 심사위원 외 별도의 각 품질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위원 및 전문가 필요함

##### 마. 제출서류

- 평가 신청에 있어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권리 지정서가 요구됨
- 또한, 저작권 안심제도를 신청하는 지정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이용허락지정서가 추가로 필요함

##### 바. 사후관리

- 사후관리로는 품질성이라는 특성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만 모니터링 심사로 월 1회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시함
- 또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원에서 제공한 교육 이수 시 재지정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함
- 품질점검을 통해 불법저작물 유통 여부 등의 위반, 품질 환경을 점검함

### 3절 저작권 안심제도 유형별 세부 평가기준 및 사후관리

○ 위에서 제시한 Plan별 운영방안을 토대로 기존 저작권 안심제도의 세부 평가기준 및 사후관리 측면의 변경안은 다음과 같음

#### 1. Plan A의 세부 평가기준 및 사후관리방안

<표 12> Plan A 세부 평가기준

항목	세부 판단 기준
저작권법 및 보호정책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관련 정책 고지의 적절성(저장서비스 제공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복적으로 관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의 채택 및 적용 여부(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다목)</li> <li>- 사이트 내 불법복제물에 대해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하였는지 여부(법 제103조 제4항)</li> <li>- 온라인상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처리 절차 구비 및 안내 여부(법 제103조)</li> </ul> </li> <li>○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준수 여부(공공기관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및 고지 여부</li> <li>-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의 적절성 여부</li> <li>- 공공저작물 개방(공공누리 적용) 여부</li> </ul> </li> </ul> <p>※ 공공기관 운영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지정 평가 전에 한국문화정보원의 평가 진단을 받아야 함</p>
관리 및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전용게시판 또는 자료실 등 사이트 내 저작권 침해 가능성 소지 여부</li> <li>○ 불법 추정 서비스 링크 존재 여부 및 저작권 침해 서비스를 광고하는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li> <li>○ 구성원들이 지정 사업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올바른 저작물 사용관리 등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li> <li>○ 저작물 자산현황 리스트 및 저작물 관리대장을 문서화하여 기록보관유지하여 제대로 관리하는지 여부</li> <li>○ 매장 또는 기관, 업체 내 정품 저작물 판매·구매·서비스이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복제물의 판매·구매·서비스이용 여부</li> </ul> </li> </ul>
이용자 보호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서비스 내 유해 저작물로 부터 이용자 보호 정책 구비 여부</li> <li>○ 저작권법 이외 현행 법령 위반 여부</li> <li>○ 성인 콘텐츠 접근 시 성인 지정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지 여부</li> <li>○ 이용자의 안심 구매를 위한 소비자 보호 환경 조성 여부(저작물 유통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입한 콘텐츠의 하자나 피해 발생 시 적절한 피해 보상체계 구비 여부</li> <li>- 교환/환불/품질보증 안내 및 허위 정보 제공 여부</li> <li>- 정당한 가격을 표시하여 판매</li> </ul> </li> </ul>

기본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 서류 대한 일치 여부 (적합성)</li> <li>○ 합법적 계약을 통한 콘텐츠만을 공급하는지 여부</li> <li>○ 최근 2년 간 신청업체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li> <li>○ 최근 2년 간 보호원으로부터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거·폐기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li> </ul>
------------	---

〈표 13〉 Plan A 사후관리 방안

구분	사후관리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심사 (3개월 1회)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운영 여부 모니터링</li> <li>- 모니터링 결과 분석 자료제공 및 개선방안 제시</li> </ul> </li> </ul>
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샘플링 현장점검(연 1회, 10% 이내 샘플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점검 수행 시 별지 제10호 실태점검표 확인</li> <li>- 현장점검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업로드를 통한 점검</li> </ul> </li> <li>○ 요청 시, 현장 방문하여 교육 및 컨설팅 등 제공</li> </ul>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센터 운영 (모니터링과 샘플링 점검을 기반으로)</li> <li>○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시 재지정 평가 가산점 부여</li> </ul>

## 2. Plan B의 세부 평가기준 및 사후관리방안

〈표 14〉 Plan B의 세부 평가기준

항목	세부 판단 기준
<b>저작권법 및 보호정책 준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관련 정책 고지의 적절성(저장서비스 제공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복적으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의 채택 및 적용 여부(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다목)</li> <li>- 사이트 내 불법복제물에 대해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하였는지 여부(법 제103조 제4항)</li> <li>- 온라인상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처리 절차 구비 및 안내 여부(법 제103조)</li> </ul> </li> <li>○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준수 여부(공공기관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및 고지 여부</li> <li>-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의 적절성 여부</li> <li>- 공공저작물 개방(공공누리 적용) 여부</li> <li>※ 공공기관 운영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지정 평가 전에 한국문화정보원의 평가진단을 받아야 함</li> </ul> </li> </ul>
<b>관리 및 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전용게시판 또는 자료실 등 사이트 내 저작권 침해 가능성 소지 여부</li> <li>○ 온·오프라인서비스 내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도입 또는 대응 방안 구비 여부</li> <li>○ 불법 추정 서비스 링크 존재 여부 및 저작권 침해 서비스를 광고하는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li> <li>○ 구성원들이 지정 사업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올바른 저작물 사용관리 등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li> <li>○ 저작물 자산현황 리스트 및 저작물 관리대장을 문서화하여 기록보관유지하여 제대로 관리하는지 여부</li> <li>○ 매장 또는 기관, 업체 내 정품 저작물 판매·구매·서비스이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복제물의 판매·구매·서비스이용 여부</li> </ul> </li> </ul>
<b>지정사 보호 환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서비스내 유해저작물로부터 보호 정책 구비 여부</li> <li>○ 저작권법 이외 현행 법령 위반 여부</li> <li>○ 성인 콘텐츠 접근 시 성인 지정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지 여부</li> <li>○ 이용자의 안심 구매를 위한 소비자 보호 환경 조성 여부(저작물 유통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입한 콘텐츠의 하자나 피해 발생 시 적절한 피해 보상체계 구비 여부</li> <li>- 교환/환불/품질보증 안내 및 허위 정보 제공 여부</li> <li>- 정당한 가격을 표시하여 판매</li> </ul> </li> </ul>



품질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검증 실시 여부</li> <li>○ 품질 정보제공 및 유지 관리활동 전담 인력 구성 여부</li> <li>○ 품질 관리활동에 따른 주기적 분석과 개선 및 조치 여부</li> </ul>
기본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의 적격 및 제출된 증빙서류의 내용일치 여부 (신분지정)</li> <li>○ 합법적 계약을 통한 콘텐츠만을 공급하는지 여부</li> <li>○ 최근 2년 간 신청업체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li> <li>○ 최근 2년 간 보호원으로부터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거·폐기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li> </ul>

<표 15> Plan B의 사후관리

구분	사후관리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심사 (매 월 1회) 모니터링 실시</li> <li>- 서비스 운영 여부 모니터링</li> <li>- 모니터링 결과 분석 자료제공 및 개선방안 제시</li> </ul>
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샘플링 현장점검(매 3개월 1회, 10% 이내 샘플조사) 실시</li> <li>- 현장점검 수행 시 별지 제10호 실태점검표 확인</li> <li>- 현장점검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업로드를 통한 점검</li> <li>○ 요청 시, 현장 방문하여 교육 및 컨설팅 등 제공</li> </ul>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센터 운영 (모니터링과 샘플링 점검을 기반으로)</li> <li>○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시 재지정 평가 가산점 부여</li> <li>○ 품질점검을 통해 불법저작물 유통 여부 등의 위반, 품질 환경을 점검함</li> </ul>

### 3. Plan C의 세부 평가기준 및 사후관리방안

〈표 16〉 Plan C의 세부 평가기준

항목	세부 판단 기준
저작권법 및 보호정책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관련 정책 고지의 적절성(저장서비스 제공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복적으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의 채택 및 적용 여부(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다목)</li> <li>- 사이트 내 불법복제물에 대해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하였는지 여부(법 제103조 제4항)</li> <li>- 온라인상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처리 절차 구비 및 안내 여부(법 제103조)</li> </ul> </li> <li>○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준수 여부(공공기관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및 고지 여부</li> <li>-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의 적절성 여부</li> <li>- 공공저작물 개방(공공누리 적용) 여부</li> <li>※ 공공기관 운영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지정 평가 전에 한국문화정보원의 평가진단을 받아야 함</li> </ul> </li> </ul>
관리 및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전용게시판 또는 자료실 등 사이트 내 저작권 침해 가능성 소지 여부</li> <li>○ 불법 추정 서비스 링크 존재 여부 및 저작권 침해 서비스를 광고하는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li> <li>○ 구성원들이 지정 사업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올바른 저작물 사용관리 등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li> <li>○ 저작물 자산현황 리스트 및 저작물 관리대장을 제대로 비치하여 관리하는지 여부</li> <li>○ 기관, 업체 내 정품 저작물 판매·구매·서비스이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복제물의 판매·구매·서비스이용 여부</li> </ul> </li> </ul>
이용자 보호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트 내 유해 저작물로부터 이용자 보호 정책 구비 여부</li> <li>○ 저작권법 이외 현행 법령 위반 여부</li> <li>○ 성인 콘텐츠 접근 시 성인 지정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지 여부</li> <li>○ 이용자의 안심 구매를 위한 소비자 보호 환경 조성 여부(저작물 유통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입한 콘텐츠의 하자나 피해 발생 시 적절한 피해 보상체계 구비 여부</li> <li>- 교환/환불/품질보증 안내 및 허위 정보 제공 여부</li> <li>- 정당한 가격을 표시하여 판매</li> </ul> </li> </ul>

기본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 서류에 대한 일치 여부 (적합성)</li> <li>○ 합법적 계약을 통한 콘텐츠만을 공급하는지 여부</li> <li>○ 최근 2년 간 신청업체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li> <li>○ 최근 2년 간 보호원으로부터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거·폐기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li> </ul>
---------	--

<표 17> Plan C 사후관리 방안

구분	사후관리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심사 (3개월 1회)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운영 여부 모니터링</li> <li>- 모니터링 결과 분석 자료제공 및 개선방안 제시</li> </ul> </li> <li>○ 온라인 교육 이수 시 재지정 평가 가산점 부여</li> </ul>

#### 4. Plan D의 세부 평가기준 및 사후관리방안

<표 18> Plan D의 세부 평가기준

항목	세부 판단 기준
저작권법 및 보호정책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관련 정책 고지의 적절성(저장서비스 제공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복적으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의 채택 및 적용 여부(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다목)</li> <li>- 사이트 내 불법복제물에 대해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하였는지 여부(법 제103조 제4항)</li> <li>- 온라인상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처리 절차 구비 및 안내 여부(법 제103조)</li> </ul> </li> <li>○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준수 여부(공공기관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및 고지 여부</li> <li>-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의 적절성 여부</li> <li>- 공공저작물 개방(공공누리 적용) 여부</li> </ul> </li> <li>※ 공공기관 운영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지정 평가 전에 한국문화정보원의 평가 진단을 받아야 함</li> </ul>
관리 및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전용게시판 또는 자료실 등 사이트 내 저작권 침해 가능성 소지 여부</li> <li>○ 온오프라인서비스 내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도입 또는 대응 방안 구비 여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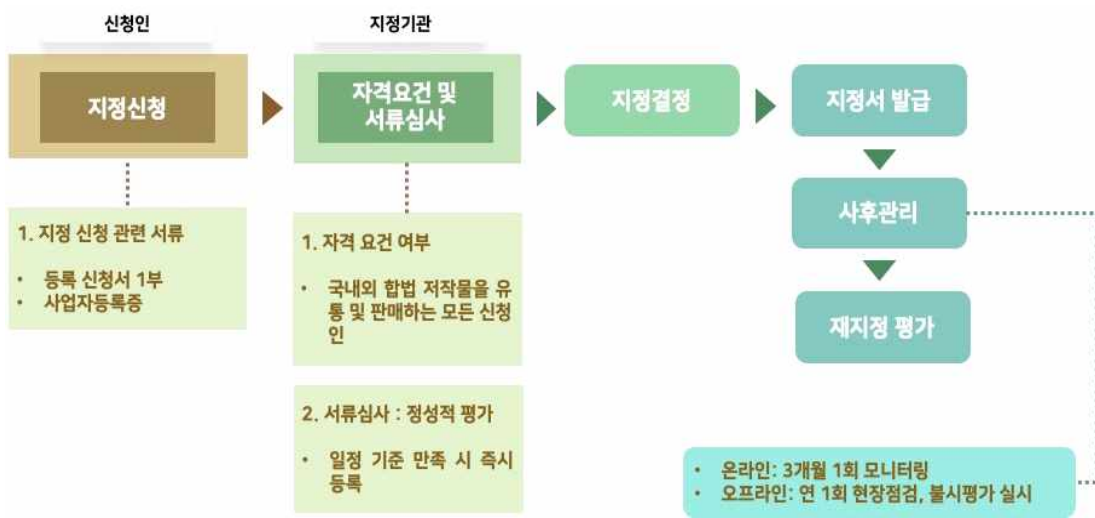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추정 서비스 링크 존재 여부 및 저작권 침해 서비스를 광고하는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li> <li>○ 구성원들이 지정 사업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올바른 저작물 사용관리 등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li> <li>○ 저작물 자산현황 리스트 및 저작물 관리대장을 문서화하여 기록보관유지하여 제대로 관리하는지 여부</li> <li>○ 매장 또는 기관, 업체 내 정품 저작물 판매·구매·서비스이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복제물의 판매·구매·서비스이용 여부</li> </ul> </li> </ul>
지정사 보호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트 내 유해 저작물로부터 보호 정책 구비 여부</li> <li>○ 저작권법 이외 현행 법령 위반 여부</li> <li>○ 성인 콘텐츠 접근 시 성인 지정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지 여부</li> <li>○ 이용자의 안심 구매를 위한 소비자 보호 환경 조성 여부(저작물 유통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입한 콘텐츠의 하자나 피해 발생 시 적절한 피해 보상체계 구비 여부</li> <li>- 교환/환불/품질보증 안내 및 허위 정보 제공 여부</li> <li>- 정당한 가격을 표시하여 판매</li> </ul> </li> </ul>
품질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검증 실시 여부</li> <li>○ 품질 정보제공 및 유지 관리활동 전담 인력 구성 여부</li> <li>○ 품질 관리활동에 따른 주기적 분석과 개선 및 조치 여부</li> </ul>
기본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의 적격 및 제출된 증빙서류의 내용일치 여부 (신분지정)</li> <li>○ 합법적 계약을 통한 콘텐츠만을 공급하는지 여부</li> <li>○ 최근 2년 간 신청업체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li> <li>○ 최근 2년 간 보호원으로부터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거·폐기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li> </ul>

<표 19> Plan D 사후관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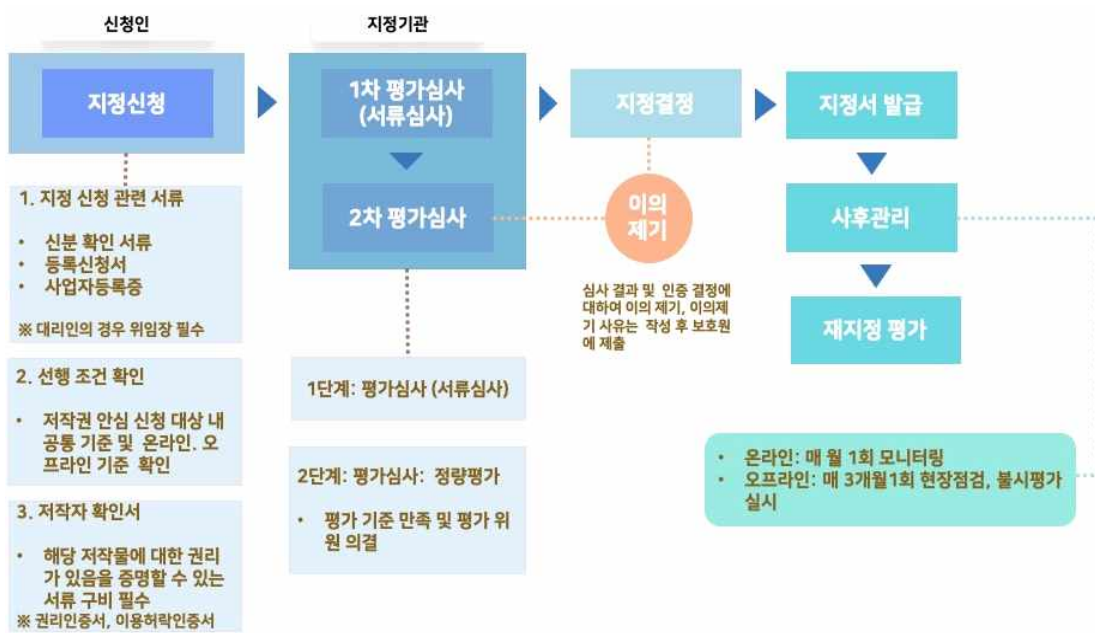
구분	사후관리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심사 (월 1회)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운영 여부 모니터링</li> <li>- 모니터링 결과 분석 자료제공 및 개선방안 제시</li> </ul> </li> <li>○ 품질점검을 통해 불법저작물 유통 여부 등의 위반, 품질 환경을 점검함</li> </ul>

#### 4절 저작권 안심제도의 방향 및 지정절차

- 초기 저작권 OK와 저작권 안심 제도는 윤리성 기반 캠페인을 중심으로, 현행 저작권 안심 제도는 전체 저작권 침해의 98%가 발생하는 온라인 지정을 중심으로 함
- 품질성 중심의 온라인 저작권 안심 제도로 운영될 경우, 까다로운 품질 평가로 공신력이나 신뢰성을 인정받을 확률이 높으나, 그에 따른 부담감과 전문성이 필요함
- 윤리성 중심의 저작권 안심 지정 평가항목 및 기준은 일정기준 만족 시 즉시 등록이 가능한 정성적 평가를 통해 자발적인 제도의 참여율을 높이고 진입을 확대함
- 하지만 적/부적합의 정성적 평가로 인해 지정 제도의 권위와 가치가 떨어지고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함
- 따라서 윤리성 중심의 저작권 안심 지정의 사후관리는 다소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가치와 신뢰성을 높여야 함
- 또한 기존의 저작권 안심 지정 마크의 경우 법률적 지정 제도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인식되는 경향으로 품질성 중심의 지정제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용자들이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캠페인성 지정 마크로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유형별로 지정절차 또한 다른 순서로 진행되는데, 윤리성 중심의 지정절차는 [그림 31], 품질성 중심의 지정절차는 [그림 32]와 같으며 윤리성 중심의 지정절차가 보다 간단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 안심 제도는 캠페인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운영 방안인 Plan A가 적합하며, 윤리성 중심의 저작권 안심 지정의 대상, 평가항목 및 기준, 사후관리 개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그림 31] 윤리성 기반 지정절차



[그림 32] 품질성 기준 지정절차

## 5절 저작권 안심제도 지정마크

### 1. 저작권 안심제도의 지정마크 현황

- 현 저작권 안심제도의 지정마크는 저작권 보호의 안심 KEY(열쇠)를 의미하며 여기서 KEY(열쇠)는 저작권 보호의 유통·이용, 안전, 활성화를 위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고 모두가 안전하고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인하는 표시를 의미함
- 그러나 실제 오프라인에서 지정현판은 일반 사용자들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고, 눈에 잘 띄지 않아서 가독성이 떨어짐
- 예를 들어, [그림 33]과 같이 왕십리역점 영풍문고에 지정현판이 배치되어있지만 마크가 안전하고 건전한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지기는 어려움
- 저작권 안심제도의 의미와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마크의 디자인 및 위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그림 33] 영풍문고 왕십리역점 저작권 OK 지정현판 현황

### 2. 저작권 안심제도 지정마크 개선방안

- 현 저작권 안심제도의 지정마크의 디자인은 초기 취지와 달리 윤리성(캠페인성)보다는 품질성으로 보여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마크의 의미전달이 더욱 어려움
- 현재 저작권 안심제도 KEY(열쇠)의 디자인이 저작권 보호라는 의미보다는 단순한 열쇠라는 의미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명확한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함
- 또한 지정마크에 ‘현 마크는 건전한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설명 문구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림 34]의 사랑의 열매, [그림 35]의 착한식당, [그림 36]의 국산 배추김치 사용 캠페인 등과 같이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는 캠페인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명칭과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34] 사랑의 열매 마크 및 응용 디자인



[그림 35] 착한가격 캠페인 마크



[그림 36] 국산 배추김치 사용 캠페인 마크



## 5장 저작권 안심 제도 중장기 사업 확장 방안

### 1절 신규 플랫폼에 대한 저작권 안심 지정 방안

#### 1. 신규 플랫폼의 저작권 쟁점

가. 2022년 신규 플랫폼 저작권 보호 이슈

- 현재 IT 기술의 성장과 다양한 신규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저작권 인식수준의 향상과 저작권 침해가 지능화 되어가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 2022년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장의 확대를 통한 메타버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저작권 문제 및 NFT 거래에 관한 저작권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나타나고 있음<sup>55)</sup>
-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저작권 보호 이슈 전망 순위는 메타버스, NFT, OTT순으로 [그림 33]과 같음



[그림 37] 2022년 저작권 보호 이슈 전망 순위

- 따라서 이용자가 안심하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각각의 신규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지정 기준 및 운영 매뉴얼이 필요함
- 저작권 안심제도의 지속적인 신청 증대 및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한 지정사업 확대 및 제도적인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5) 2022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1) 메타버스

- 메타버스란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말로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일종의 가상세계를 의미함
- 이와 같이 메타버스가 일상을 가상공간으로 확장시키고, 관련 경제 규모도 확대됨에 따라서 메타버스 내의 권리 보호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메타버스 안에서 만들어진 제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 보호관련 기존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선방안 및 매뉴얼이 필요함
- 가상세계라는 특성에서 나온 여러 저작권 쟁점이 존재하며 대표적인 국내외 저작권 관련 이슈는 아래와 같음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이슈<sup>56)</sup>**

- ✓ 사례 1. 미국의 ‘로블록스’ 사건
  - 메타버스에 기반한 미국의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플랫폼 안에서 라이선스 계약 없이 가상 음악 재생장치를 활용해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임
- ✓ 사례 2. 네이버의 ‘제페토’ 사건
  - 이 사건은 네이버가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서는 이용약관에 의하여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본인에게 있지만, 해당 사용자 콘텐츠 사용권한을 회사에게 부여한 것으로 간주함

(2) NFT

- NFT란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 등을 블록체인 상에 저장하여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함
- NFT는 2017년 블록체인 기반 게임인 ‘크립토키티’를 통하여 대중화되었으며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양한 기업이 활용하고 있고 대체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최근 미술품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음<sup>57)</sup>
- 특히, NFT 기술은 복제가 쉬운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미술시장에서 많이 활용되었으면서 이에 따라 많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
- 또한, NFT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거래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할 때 전송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도 및 이용허락이 필요함

56) 박소연, 문예은, 신규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이슈 : 메타버스와 저작권,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57) 전재립, NFT(Non Fungible Token)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NFT에서의 저작권 이슈<sup>58)</sup>**

- ✓ 사례 1.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작가 작품의 NFT 사건’
  -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작가의 작품을 NFT를 통해 발행 및 경매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됨, 이는 NFT 플랫폼에서의 디지털 아트 거래환경에서 NFT화하는 ‘민팅’ 과정에서 적법성 문제와 불 명확한 계약내용에 따른 불확실성이 발생이 원인이 됨

**(3) VR/AR**

- VR은 현실세계를 인공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로 얻기 힘들거나 얻을 수 없는 경험이나 환경을 제공하여 인체의 오감을 자극하여 실제와 같이 체험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AR은 증강현실로 VR의 한 분야로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마치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함
- 가상 및 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해서 2차적 저작물 작성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가상 및 증강현실에서는 전시권, 파노라마 자유가 저작권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 VR/AR에서의 저작권 이슈<sup>59)</sup>**

- ✓ 사례 1. 골프존 사건
  - 2020년 3월 여러 골프장의 실제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프린 골프 시스템에 대하여 골프 코스의 설계를 저작물로 인정함
  - 골프코스를 실제로 만들어서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설치물 등이 결합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 별개로 골프장 조성, 운영자의 성과물로 보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 ✓ 사례 2. 중국의 타임드림테크놀로지 미술작품 사용 사건
  - 미술작품 사용에 따른 사례로 중국의 북경타임드림테크놀로지 회사에서 원작가의 작품을 VR영상에 사용하였으며, 법원은 VR영상이 새로운 작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복제권 침해로 배상 할 것을 판결함

58) 신기술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59) 신기술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4) 인공지능<sup>60)</sup>

-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기계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AI가 만든 음악은 저비용으로 빠르게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수요는 높지만 현행 저작권법상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AI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반면 유럽에서는 ‘2017년 로봇시민 권고안’을 통과시킨 후, AI를 독립된 의사결정주체로 보고 있으며 AI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등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인공지능에서의 저작권 이슈

- ✓ 사례 1. 중국의 ‘텐센트 드림라이터 사건’
  - 중국의 사례로 텐센트가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드림라이터’가 작성한 글을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건임
  -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드림라이터가 작성한 기사는 독창성을 보유하며 창작 과정의 저작권법상의 ‘텍스트 작품 보호 조건’을 만족한다고 보아 저작물로 인정함
- ✓ 사례 2. ‘넥스트 램브란트 사건’
  - 위 사건은 미술작품 램브란트의 사건으로 이미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작품을 토대로 딥러닝이 이루어짐
  - 미술관의 협조로 소유권 분쟁이 없이 가능했지만 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하더라도 딥러닝으로 취득한 데이터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면 저작물이 합법적이라고는 판단할 수는 없음

60) 김찬술, 신규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이슈 : 인공지능 기술과 저작권 관련 이슈,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나. 신규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쟁점 도출

- 위에서 조사한 4가지 신규 플랫폼(메타버스, NFT, VR/AR, 인공지능)에 대하여 저작권 쟁점을 선형 연구 검토 및 사례 조사를 통해 제작, 운영 등의 측면에서 도출하였으며 <표 20>와 같음

<표 20> 신규 플랫폼 구분별 저작권 쟁점

	구분	저작권 쟁점
메타버스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 저작물 사용</li> <li>◆ 미술 저작물 사용</li> <li>◆ 건축물, 디자인 등의 저작물 사용</li> <li>◆ 2차 저작물 작성권</li> </ul>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 창작물의 저작권</li> <li>◆ 상표권 보호</li> <li>◆ 퍼블리시티권</li> <li>◆ 메타버스 운영 시 수집되는 데이터</li> <li>◆ 수집된 데이터 분석의 저작권</li> </ul>
	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타버스 자체의 저작권</li> </ul>
NFT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FT 발행 시 저작권 연동</li> <li>◆ 제한적 권리의 NFT 발행</li> </ul>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FT의 저작권 양도</li> </ul>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FT 생성 소프트웨어 자체의 저작권</li> <li>◆ NFT 형성 데이터 자체의 저작권</li> </ul>
VR/AR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및 미술품 저작물</li> <li>◆ 기능적 저작물</li> <li>◆ 캐릭터 및 등장물의 저작권</li> <li>◆ 편집 저작물</li> <li>◆ 스크래핑</li> <li>◆ 공정이용</li> <li>◆ 2D 저작물의 3D화</li> </ul>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강현실 기기에 의한 데이터 수집</li> <li>◆ 수집된 데이터 분석의 저작권</li> <li>◆ 소프트웨어 자체의 저작권 (소스코드, 객체코드)</li> </ul>
	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캐릭터의 저작권</li> </ul>
AI (인공지능)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학습 데이터</li> <li>◆ AI 알고리즘 프로그램</li> <li>◆ AI 구현코드</li> </ul>
	산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의 창작물</li> <li>◆ AI를 활용한 지적 재산물</li> </ul>

## 2. 신규 플랫폼에 대한 저작권 안심 지정 평가 기준 적합성 분석

- 메타버스, NFT, VR/AR, AI(인공지능)에 대하여 위에서 도출한 저작권 쟁점을 토대로 현 저작권 안심제도의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적합성을 분석함
- 각 쟁점에 따라 추가 되어야 하는 항목과 현재 상황에서는 변경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가. 메타버스<sup>61)</sup>

#### (1) 제작의 관점

- 음악/ 미술품/ 건축품 디자인 등의 저작물 사용은 가상세계에 현실공간을 그대로 옮겨오거나 복제하는 경우에 저작물 침해에 해당되며 저작권법 및 보호 정책 준수의 현 평가기준에서 다 커버가 가능함
- 2차 저작물 작성권은 메타버스 저작권 주체에 따라 유통업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나누어 평가가 필요함
  - ㉮ 유통업체 관점에서 메타버스 2차 저작물 작성권은 2차 저작물 자체는 독립적인 창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의 대상이 되지만, 플랫폼 제공 유통 업체에 저작물에 대한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각자의 플랫폼 기관별로 저작권 보호 환경을 위한 기술 또는 이용 규정을 별도로 구비해야 한다는 항목이 필요함
  - ㉯ 개인 창작자의 관점에서 2차 저작물 작성권은 독창적인 창작물에 대해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인 감성의 표현을 담고 있는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2) 운영의 관점

- 사용자 창작자의 저작권 항목에 대해서는 1인 서비스 관점에서 저작권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영역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만들어졌을 때 아이디어 도용이 행위규제법의 영역에서만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메타버스 내 상표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현 저작권 보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며 유해 저작물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없는 항목이고, 퍼블리시티권은 정품 저작물 유통에 대해서도 초상권이기 때문에 평가가 필요 없음
- 운영 시 데이터 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IT 환경 및 기기간의 데이터 교환 및 디지털 송신에서도 기존의 저작권 원칙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준을 확대 및 축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3) 메타버스 자체의 관점

- 메타버스 자체의 저작권 관점에서 권리귀속 관련 쟁점으로는 소설, 영화 등과 같은 정통적인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와 이용자의 역할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데 온라인 환경의 플랫폼에서는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음에 따라 누구에게 저작권 지정을 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 메타버스 자체의 저작권의 저작권 보호환경 항목에서 세부 판단 기준에 ‘메타버스

61) 박소연, 문예은, 신규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이슈 : 메타버스와 저작권,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콘텐츠 보호 및 모니터링 기술 확보 여부' 항목이 필요함

<표 21> 메타버스 저작권 안심 지정 평가기준 적합성 분석

	유형		온라인			오프라인			공통
	항목	저작권법 및 보호정 책 준수	저작권 보호환 경	유해 저 작물의 근절	정품 저 작물 유 통 및 이용	관리운 영	소비자 보호	사업자 신고사 항	
메타버스	제작	음악 저작물 사용	○	○	X	○	-	○	○
		미술품 저작물 사용	○	○	-	○	-	○	○
		건축물 디자인 등 저작물 사용	○	○	-	△	-	○	○
		2차 저작물 작성권	△	X	△	△	-	△	○
	운영	사용자 창작 물의 저작권	○	△	△	○	○	△	○
		상표권 보호	○	○	-	○	○	○	○
		퍼블리시티권	○	○	-	-	○	○	○
		운영 시 수집 되는 데이터	X	X	X	○	X	○	○
		데이터 분석 시 저작권	△	-	-	X	○	○	○
	자체	메타버스 자체의 저작권	△	△	△	△	△	△	○

## 나. NFT

### (1) 발행의 관점

- NFT의 발행 항목은 현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의 목표가 온/오프라인에서 합법적인 저작물을 판매 및 유통하는 업체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발행 자체는 저작권과 관련 없이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현 평가 쟁점에 부합하지 않음

### (2) 거래의 관점

- NFT 거래에 있어서는 저작물에 있어서 NFT 기반 디지털 저작물로 변경되어 유통을 위해 업로드 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권한이 없는 자가 업로드 할 때에는 복제권, 전송권 등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 따라서 NFT 거래에 있어서 저작물을 NFT로 민팅(Minting, 화폐주조행위)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자 거래 조건을 미리 정했는지에 대한 항목 추가가 필요함
- 양도 과정에서 권리소진을 인정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권리 소진론(디지털 방식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소진시켜 자유롭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리)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추후 논의가 필요함

### (3) 운영의 관점

- 운영관점에서 NFT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저작물이 디지털화되고 NFT 정보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저작권침해의 방조에 해당될 수 있지만 ‘저작물에 대한 관리 통제’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 NFT는 메타 데이터에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 시 저작물이 직접 전송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효성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NFT를 어떤 재산에 해당시킬지에 대한 추후 논의가 필요함



〈표 22〉 NFT 저작권 안심 지정 평가기준 적합성 분석

	유형		온라인			오프라인			공통
	항목		저작권법 및 보호정 책 준수	저작권 보호환경	유해 저 작물의 근절	정품 저작 물 유통 및 이용	관리운 영	소비자 보호	사업자 신고사 항
NFT	발행	NFT 발행 시 저작권	-	-	-	-	-	-	-
		제한적 권리의 NFT 발행	-	-	-	-	-	-	-
	거래	NFT의 저작권 양도	O	X	-	O	△	O	O
	운영	NFT생성 소프트웨 어의 저작권	△	△	△	-	-	-	O
		NFT형성 데이터 저작권	△	△	△	-	-	-	△

## 다. VR/AR

### (1) 구현의 관점

- VR/AR에서 건축, 미술품, 캐릭터/디자인등 저작물을 구현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현재 컴퓨터 게임진행과정의 블로그 게재와 유사한 개념으로 새로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 평가기준에서 평가가 가능함
- VR/AR 안에서 2차원 데이터를 3차원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와 같이 변형적 이용으로서 공정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기존 법리 안에서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평가기준에 대해서 부합함

### (2) 운영의 관점

- VR/AR에서 빅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복제, 전송 등의 저작권 침해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어느 범위에서 공정이용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2차 저작물 작성권은 VR/AR 저작권 주체에 따라 유통업체와 개인으로 나누어 평가가 필요함
  - ① 유통업체 관점에서 가상 및 증강현실에서 2차 저작물 작성권은 2차 저작물 자체는 독립적인 창작물로 인정되어 창작자의 저작물로 보호의 대상이 되지만, 플랫폼 제공 업체에 저작물에 대한 활용 권한은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함
  - ② 개인 창작자의 관점에서 2차 저작물 작성권은 독창적인 창작물에 대해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인 감서의 표현을 담고 있는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음

### (3) VR/AR 자체의 관점

- 가상 및 증강현실 현실 내의 자체 캐릭터에 대해서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구성요소들을 선택 및 배열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동일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현 저작권 기준보다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VR/AR은 운영 부분에 대하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 변형 및 위조에 대한 대응 방안 구비 여부 및 불법 데이터 사용여부, 가상현실 속 마켓에서의 소비자 보호 환경 조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추가되어야 함

<표 23> VR/AR 저작권 안심 지정 평가기준 적합성 분석

	유형		온라인			오프라인			공통
	항목		저작권법 및 보호 정책 준 수	저작권 보호환경	유해 저 작물의 근절	정품 저작물 유통 및 이 용	관리운 영	소비자 보호	사업자 신고사 항
VR/AR	구현	건축 저작물	○	○	-	○	○	○	○
		미술 저작물	○	○	-	○	○	○	○
		기능적 저작물	○	○	○	○	○	○	○
		캐릭터/ 기타 등장물 저작권	○	○	○	○	○	○	○
		편집 저작물	○	X	○	X	○	○	○
		스크래핑	○	○	-	X	○	○	○
		공정이용	○	○	○	○	○	○	○
		2D 저작물의 3D화	○	△	○	○	○	○	○
		2차 저작물 작성권	○	△	○	○	△	○	○
	운영	증강현실기기 데이터 수집	△	-	-	△	△	-	○
		수집된 데이터분석의 저작권	△	-	-	△	X	-	○
		소프트웨어 자체의 저작권	○	△	△	○	○	○	○
	자체	자체 캐릭터 저작권	○	X	X	○	△	○	○

## 라. 인공지능<sup>62)</sup>

### (1) 학습의 관점

- 인공지능의 데이터 셋은 편집물로 인정되고,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편집저작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무단으로 복제,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서 현 저작권 평가 기준에서 평가가 가능함
-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및 구현코드 대해서는 귀속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알고리즘을 개발한 프로그래머에게 권리를 부여하자는 견해가 있지만 프로그래머의 표현 방식에 따른 것인가와 알고리즘 유일성의 문제로 논쟁이 될 수 있음.<sup>63)</sup>
- 또한, 알고리즘 및 구현코드에 대해서는 유해 저작물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기준에 부합되지 않음

### (2) 인공지능의 산출물 관점

- 인공지능이 제작한 창작물은 현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간이 만든 독창적 창작물만 저작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평가될 수 없지만 몇몇 해외 사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판례가 존재하므로 새로운 법제도에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함
  - ① 인공 지능 시스템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에 기여도에 따라서 권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 자체가 목적이 상품 식별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 ②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적 재산물에 대해서는 이를 도구로 사용하여 창작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서 권리가 귀속되며 어느 정도의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귀속 문제에 대한 기준만 추가된다면 평가기준에 부합할 수 있음
  - ③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창작적인 가치의 보호를 핵심으로 하여 기준이 만들어져야 하며 저작권보호환경에 있어 기존에 존재하는 저작물을 토대로 학습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현 평가기준보다 수준을 낮춰서 평가하는 것이 저작권 안심제도 취지에 부합함
- 학습 데이터 및 산출물 항목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에 따라서 데이터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여부에 대한 항목 추가가 요구됨
- 책임 및 윤리 항목으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계약 및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보호 정책 구비 여부가 추가되어야 함

---

63) 박지원, Copyright Implications of the Use of Code Repositories to Train a Machine Learning Model (머신러닝 모델훈련을 위한 소스코드 이용의 저작권 쟁점) : GitHub의 Copilot을 중심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표 24〉 인공지능 저작권 안심 지정 평가기준 적합성 분석

	유형		온라인			오프라인			공통
	항목		저작권법 및 보호정책 준수	저작권 보호환경	유해 저작물의 근절	정품 저작물 유통 및 이용	관리운 영	소비자 보호	사업자 신고사 항
AI(인공지능)	학습	AI 학습 데이터	○	○	○	○	○	○	○
		AI 알고리즘 프로그램	△	-	△	-	△	△	○
		AI 구현코드	△	-	-	-	X	X	-
	산출물	AI의 창작물	-	-	-	-	-	-	-
		AI를 활용한 지적 재산물	△	△	△	○	△	○	○

### 3. 신규 플랫폼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 개선 방안 및 운영 매뉴얼

- 신규 플랫폼 별 저작권 쟁점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신규 운영 매뉴얼을 제안함
- 제안하고자 하는 개선 방안의 전체적인 방향은 플랫폼 별 이용 규정 구비, 2차 저작물 작성권 기준, 분야별 전문가 의견 도입, 개인 간의 거래 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제작 편집 시 저작물 불법 사용, 거래 시 소비자 보호 환경 조성, 저작권 관련 사전 교육 실시 여부임

#### 가. 메타버스

- 저작물 작성권, 메타버스 자체의 저작권 측면에서는 플랫폼의 저작권 관련 이용 규정 구비 여부에 대한 기준과 메타버스 콘텐츠 보호 및 모니터링 기술 확보 여부 항목이 추가 되어야 함
- 개인 창작자 측면에서 메타버스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은 현재 평가기준이 유통업체(기관)의 관점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커버하기가 애매하여 평가위원들의 평가 시 메타버스 전문가가 필요함
- 메타버스 운영 시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는 디지털 기기 간의 교환 및 송신 부분에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함
- 이는 기술적인 문제로 운영 매뉴얼 부분에서 현재 저작권법을 토대로 평가 기준 확대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가 필요함

#### 나. NFT

- NFT 발행 자체에는 저작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려할 부분이 없음
- 거래 과정에서는 디지털 저작물로 변경될 때 복제 및 전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NFT 발행자와 거래자 사이의 조건 구비 여부에 대한 항목 추가가 필요함
-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저작권 보호 환경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사후에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함

#### 다. VR/AR

- 편집 저작물 또는 증강현실기기에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불법 데이터 사용 혹은 위조에 대한 대응방안 구비 여부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함
- 그러나 VR/AR 안에서 발생하는 거래 과정이나 자체 캐릭터의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현 평가기준에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어 운영 매뉴얼 개선 시 온라인 거래 과정에 대한 매뉴얼이 개선되어야 함

#### 라. 인공지능

- 인공지능에서는 현재 저작물에 대한 귀속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현 저작권법 상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추후 논의가 필요함
- 현 평가기준 안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가치 인정 및 저작물 이용 허용 여부에 대한 항목만 개선이 요구됨
- 인공지능에서 코드 및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전문가를 평가위원회에 지정하여 사후에 검토하는 과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절 저작권 안심 제도의 신규 혜택 사항

### 1. 저작권 안심 제도 신규 혜택 사항 발굴

-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는 윤리성 중심의 지정제도로서 규정 준수 여부에 따른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낮은 참여율로 인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지정에 따른 기존의 혜택 사항은 지정사 및 예비 지정사 대상 전문 컨설팅 및 맞춤형 상담 제공, 지정사 및 예비 지정사 대상 무료 교육 제공,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사 사업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저작권 안심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음
- 따라서 현 저작권 안심의 신규 혜택을 유지하되 자발적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지원을 중심으로 윤리성 중심의 지정제도 혜택을 더하여 중장기적인 확장이 필요함
- 저작권 안심 제도 신규 혜택 사항과 세부 내용은 [그림 38]와 같음



[그림 38] 저작권 안심 제도 신규 혜택 사항 제시

#### 가. 정부·공공기관 사용 혜택

- 저작권 안심 지정 업체의 저작물 혹은 판매 상품을 우선 구매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실시함
- 혹은 저작권 안심 지정 업체의 저작물 혹은 판매 상품을 구매·사용 시 정부·공공기관 용역·R&D 과제 입찰 시 가산점 부여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개척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있는 업체(기업, 개인)을 발굴하여 사회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함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운영 시,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를 지원이 필요함

#### 나. 정부 포상 제도 운영

- 안심 지정된 우수 업체 및 기관과 개인을 선발하여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함
- 정부 포상에 따른 우수 업체의 사례를 홍보함
- 우수 업체의 정부 포상과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저작권 산업 환경에 기여함
- 정부 포상 제도 운영 시 합법 저작물 유통 및 판매 업체(기관, 개인)을 정부 포상 제도인 ‘지식재산 진흥 유공’ 등에 추천함

#### 다. 저작권 안심 제휴 확보

- 현 네이버 뉴스의 저작권 안심 제도 가산점 제도와 같이 기업과의 제휴를 확대하여 지정사에 혜택을 제공함
- 제휴 대상은 포털, 저작물 1차 제작자(한컴 등 SW업체, 음반 제작사 등)이 있음
- 기업과의 제휴를 확보함으로써 가치창출, 다양한 콘텐츠 간의 제작 및 신뢰성 기반의 유통 활성화하는데 기여함
- 저작권 안심 제휴 확보 지원 운영 시, 저작권 안심 지정 받은 업체(기관, 개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고 수익도 확보할 수 있는 계약상의 보호 장치가 마련이 필요함

#### 라. 기술 금융 지원, 세제혜택

- 기술 보증, 은행대출 등 투자 및 용자 지원 등의 금융 금전적 지원 혜택을 제공함
- 저작권 안심 지정 업체 (기관, 개인) 및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함
- 금융 및 금전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합법 저작물 제공하는 업체와 이용자에게 거래 및 유통 비용 절감을 통해 합법 저작물의 유통 환경 성장에 도모함
- 금전적 혜택 운영 시, 안정적인 재원기반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과 금융권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중소기업자)와 대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구분하며 시장여건, 금융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점진적으로 확대가 필요함

#### 마. 법률 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

- 법률 근거 마련을 통한 법적 입증 자료 제공함
- 해외 진출 시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을 실시함
- 법률 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을 함으로써 저작물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으며, 이용자는 원활한 저작물 서비스 이용하며 저작권 관련 수준과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함
- 법률 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 운영 시 지정제의 실효성과 공신력을 위해 법적 근거 재정비가 필요하며, 저작물 유통 및 거래 계약·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저작권법



및 지자체 조례와 연계성 확보,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구성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바. 지정사 홍보 강화

- 저작권 보호원 채널이 아닌 SNS, Youtube 등의 기업 제휴 창구를 통한 홍보 채널 확대함
- 저작권 안심 공익 광고 등의 TV 및 다양한 매체의 홍보 제공함
- 지정사 홍보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지정사에 대한 인지도를 높아짐에 따라 저작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지정활성화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저작권 안심 지정 제도의 브랜드 기반을 마련함

사. 등급제 운영 및 안심 코인 제작

- 저작권 안심 등급제도 운영을 통해 등급별 혜택을 제공함
- 안심 코인 제작을 통해 등급별 코인 지급과 저작권 안심 유통사 상품 및 서비스 사용 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
- 등급제 운영 및 안심 코인 제작을 제공함으로써 저작물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 도모와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가 추구하는 윤리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음

아. 유통 판매처 개척

- 저작물 판매 물 개설을 통해 안심 지정 업체 판로 개척함
- 유통 판매처 개척으로 저작권 관련 시장 확대와 성장에 기여
- 등급에 따른 포인트, 구매적립 등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가능함
-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으로 온라인 몰, 저작권 박람회 등의 합법 저작물 판매 장소 설치 운영하며, 저작권 관련 시장 확대와 성장에 기여함

자. 지정사, 지정인 대상 교류 확대

- 업체 혹은 이용자 간 상호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제공함
- 주기적인 세미나, 교육강화, 학회 등을 통해 대상 교류 활동을 제공함
- 지정사, 지정인 대상 교류 확대함으로써 경쟁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저작물의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인 창작을 통해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 추구

## 2. 저작권 안심 제도 단계별 신규 혜택 사항 제시

- 다음 <표 25>과 같이 저작권 안심의 신규 혜택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5〉 단계별 신규 혜택 사항

구분	신규혜택사항	
단기	- TV 및 다양한 매체 홍보 - 온라인 홍보 - 우수기업 정부 포상	- 오프라인 홍보 - 지정사 사업 활성화 지원 - 저작권 안심 로고 개편
중기	-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지정사 제품 사용 혜택 - 정부지원 사업 가산점 부여	- 유통 판매처 개척 - 지정사, 지정인 대상 교류 확대 - 법률지원 및 해외진출지원 - 저작권 안심 제휴 확보
장기	- 세액공제 및 감면 - 기술 금융 지원	- 등급제 운영 - 안심 코인 제작 - 대출우대

가. 단기

- TV 및 다양한 매체 홍보,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 지정사 사업 활성화 지원, 저작권 안심 로고 개편, 우수기업 정부 포상의 단기적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홍보 인센티브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홍보 인센티브에 따라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저작권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나. 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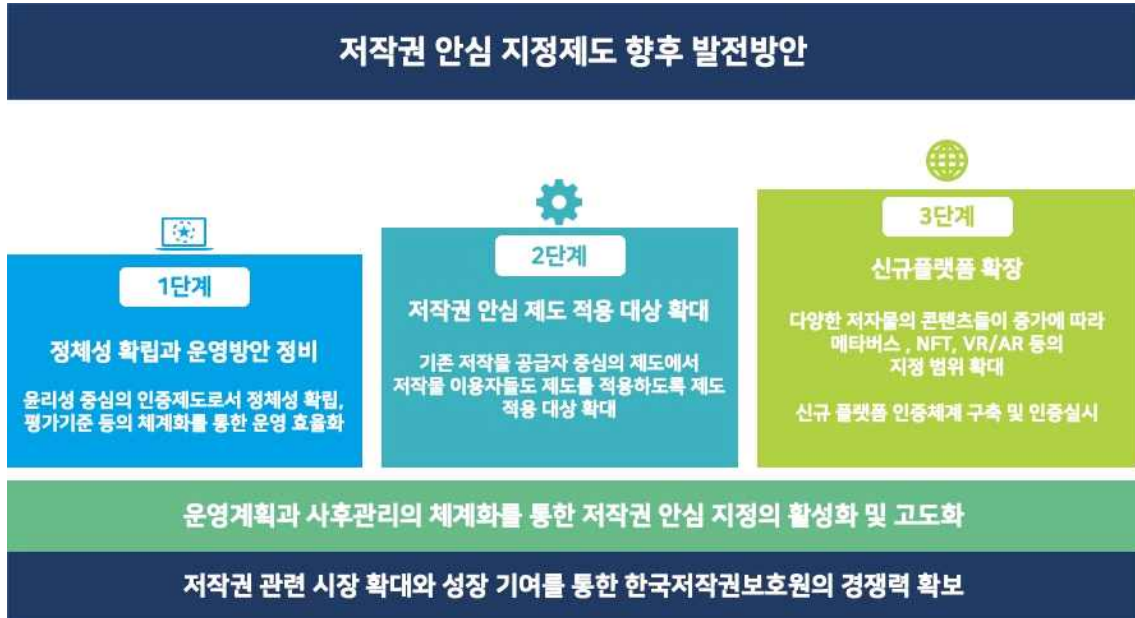
- 홍보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추며 중기 단계의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아가야함
- 중기 단계의 인센티브는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지정사 제품 사용 혜택, 정부지원 사업 가산점 부여, 유통 판매처 개척, 지정사 및 지정인 대상 교류 확대, 법률지원 및 해외진출지원, 기업과의 저작권 안심 제휴 확보의 행정적 인센티브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행정적 인센티브에 따라 신뢰성을 기반으로 저작물의 유통 및 거래 활성화, 이를 통해 저작권 안심 성장 기여와 해외진출 기반 마련

다. 장기

- 홍보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추며 중기 단계에서 더 나아가 장기 단계의 인센티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함
- 장기 단계의 인센티브는 세액공제 및 감면, 기술금융지원, 대출우대, 온라인서비스 내 등급제 운영, 온라인서비스 내 안심코인 제작의 금전적 인센티브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금전적 인센티브에 따라 저작권 거래에 대한 비용 및 부담 경감과 유통 환경 조성에 따른 거래 활성화
- 따라서 중장기적인 단계별 혜택 확장을 통해 지정 참여율 증대와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의 목표인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활성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함

### 3절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 향후 발전 방안

-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관련 유사 제도 현황 분석과 현 저작권 안심 지정 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안을 [그림 35]와 같이 제시함



[그림 39]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 향후 발전방안

#### 1. 정체성 확립과 운영방안 정비

- 가. 저작권 안심 지정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정체성 확립과 운영방안 정비 필요
- 나. 윤리성 중심과 품질성 중심의 지정제도 사이 혼란에 따라 윤리성 중심의 지정제도로써 정체성 확립하며, 품질지정의 이미지를 갖는 기존 저작권 안심마크 변경과 온·오프라인 동시 운영을 통해 캠페인성으로서 인식 확대
- 다. 평가기준, 사후관리의 체계화를 통한 운영 효율화
- 라. 따라서 윤리성 중심의 지정제도로써 정체성 확립과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통해 저작권 안심 지정 제도의 참여율 증대와 활성화

#### 2. 저작권 안심 제도 적용 대상 확대

- 가. 기존의 저작권 안심 지정 제도는 초기 운영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합법 저작물 유통 및 판매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됨
- 나. 공급자 중심에서 합법저작물 이용자(수요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저작권 안심 제도 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함
- 다. 또한,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 증가에 따라 SNS,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에 대해 적용 대상 확대

- 라. 합법저작물을 이용을 통해 사랑의 뱃지와 같은 저작권 안심 굿즈 제공을 활용하여 이용자용 저작권 안심 캠페인 확대
- 마. 따라서 저작물 안심 제도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유통 환경 조성으로 거래 활성화 기여

### 3. 신규플랫폼 확장

- 가. 기존의 저작권 안심 지정 제도는 한정된 범위 안의 음악, 영상, 뉴스, 출판 등의 저작물을 지정해왔으나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들이 증가함에 따라 메타버스, NFT, VR/AR, 인공지능 등 지정 범위 확대가 필요
- 나. 따라서 신규플랫폼 지정체계 구축 및 지정실시를 통해 신규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참여 확대로 관련 시장의 확대 및 성장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경쟁력 확보

## 6장 결론

### 1절 저작권 이슈와 안심제도의 현황

- IT 기술의 성장 및 코로나로 인하여 최근 콘텐츠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특히 SNS와 1인 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확대에 따라 불법 복제 및 전송이 용이하여 유통시장 또한 확산되었지만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심각성에 대한 인지는 상대적으로 낮음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안심제도는 2015년 ‘저작권 OK’ 라는 사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최근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에서의 지정확대가 늘어나고 있음
- 현 ‘2022년 저작권 안심제도’ 의 평가기준은 온라인, 오프라인, 공통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으며 적합/ 부적합을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지정여부가 결정됨
- 그러나 저작권 안심제도를 만들 때 이용자의 저작권 인식 수준과 유통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정사업의 방향성 재정립 및 확대가 요구됨

### 2절 저작권 안심 제도의 한계 분석 및 개선 방향 설정

- 초기 저작권 안심제도 (2015년 저작권 OK)의 설정 방향은 윤리성 기반의 온/ 오프라인 동시에 운영하지만 오프라인 위주의 평가제도로써 오프라인 정품 콘텐츠 업체들이 온라인 업체와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작됨
- 그러나 현재 저작권 안심제도 평가위원단의 FGI 분석에 따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판단 범위의 확대 및 방향성이 흐려지면서 평가기준이 모호해졌고 이에 따른 평가기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요구됨
- 또한, 현행 저작권 안심제도(2022년) 분석 결과 저작권 안심제도의 평가기준 혼란, 온/ 오프라인 통합 운영 여부, 사후관리의 어려움, 정체성 혼란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됨
- 본 연구에서는 위 의견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4가지 (Plan A: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 운영하면서 윤리성 기반, Plan B: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 운영하면서 품질성 기반, Plan C: 온라인만 운영하면서 윤리성 기반, Plan D: 온라인만 운영하면서 품질성 기반)의 대안방안을 제시함
- Plan A,B,C,D의 각 대안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콘텐츠라는 특성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대가 되고 있지만 오프라인 현판의 시각적 홍보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음
- 따라서 Plan A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 운영하면서 윤리성 위주로 가는 방향을 최중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함

### 3절 저작권 안심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저작권 안심 제도 개선방안에 앞서 국내 관련 유사제도를 조사하였으며, 지정유형에 따라 품질성 중심의 지정제도와 신뢰성 중심의 지정제도로 구분하여 분석함

- 품질성 중심의 지정제도와 신뢰성 중심의 지정제도 모두 유통 및 판매 또는 소비에 있어서 효율성 제공과 신뢰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지정 목적이 같으며, 품질성 중심의 지정제도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의 우수성, 정보 비대칭성 감소가 지정 목적이며, 윤리성 지정제도는 신뢰성 확보와 윤리적 가치 확산에 목적을 두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 안심제도의 가장 적합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유사제도 분석 및 지정사업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Plan별 평가항목, 대상,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였으며 윤리성 기반의 온·오프라인 동시운영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그러나 윤리성 중심의 지정제도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지정심사와 전문화된 평가기준 없이 심사가 진행되어 품질성에 비하여 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 그리고 공정성이 결여됨
- 전문성과 신뢰성 그리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가능한 평가기준, 사후관리, 혜택 부분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또한, 현 저작권 안심제도의 지정마크의 디자인은 초기 취지였던 캠페인성보다는 품질성 위주로 보여기 때문에 가독성, 의미성이 떨어짐
- 지정마크의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사랑의 열매’, ‘착한식당’ 등과 같이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는 캠페인성을 접근할 수 있는 명칭과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4절 저작권 안심 제도 중장기 사업 확장 방안

- 근래의 SNS, 유튜브, 1인 미디어 등의 활성화로 인하여 콘텐츠 관련 저작권이슈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음. 이러한 개인에 대한 자발적 참여 캠페인으로서 사업영역을 확대하면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참여자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단계적으로 혜택을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22년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시장의 확대에 따라 메타버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저작권 문제 및 NFT 거래 관련 저작권 문제 등이 새로운 이슈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인공지능, VR, AR 등에서 새로운 저작권 관련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음
- 따라서 저작권 안심제도에서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각각의 신규 플랫폼에 대해서 새로운 지정 기준 및 운영 매뉴얼이 확대되어야 하며 제도적인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현재 신규 플랫폼 관련 저작권 쟁점에 따른 항목 추가 및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모든 부분을 커버 및 수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되 후속 연구와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추후 논의가 필요함

## 참고문헌

- [1]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 [2] 2022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 [3] 2022년 1분기 온라인 저작권 침해 분석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 [4] e나라 표준지정, “KS지정 심사진행가이드“, <https://standard.go.kr/KSCI/crtfcguidedoc/getCr tfcAcqGuideDocPopup.do>;
- [5] ICC, “KC지정”, <http://icccert.co.kr/kc-2>
- [6] Intertek. “KC지정 가이드“, [http://www.intertek.co.kr/wp-content/uploads/2018/02/KC\\_guideline\\_kr\\_201802.pdf](http://www.intertek.co.kr/wp-content/uploads/2018/02/KC_guideline_kr_201802.pdf), 2022.
- [7] 고대승, 이동욱, “국내 지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 21.
- [8] 국가법령정보센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음식점위생등급지정및운영관리규정/\(2022-25,20220331\)](https://www.law.go.kr/행정규칙/음식점위생등급지정및운영관리규정/(2022-25,20220331)), (2022년07월20일).
- [9]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지정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중심경영\(CCM\)지정제도운영·심사에관한규정/\(2022-3,20220314\)](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중심경영(CCM)지정제도운영·심사에관한규정/(2022-3,20220314))
-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우수관리(GAP)”,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do>
- [11] 국제품질기술원, “전기용품 안전(KC)지정”, [https://www.iso-korea.co.kr/?page\\_id=371](https://www.iso-korea.co.kr/?page_id=371)
- [12] 김성태, 유도일, “GAP지정 학교급식 농산물 선호도 분석: 충북지역 영양사의 급식용 사과 소비를 중심으로“ 농업경제연구58, no.4, (2017), 21-46.
- [13] 김재만, 김광수. “KC지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효과: 공산품을 중심으로.“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7.3 (2015): 307-317.
- [14] 김재호. “관광품질 지정제 발전방안.“ 한국관광정책 -72 (2018): 52-61.
- [15] 김지영, “[강사의 서재]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등 ‘인터넷 저작권법’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원의 『인터넷에서 저작권』“, 한국강사신문, 2022.03.22.
- [16] 김찬술, 신규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이슈 : 인공지능 기술과 저작권 관련 이슈,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 [17] 네이버 블로그, “GAP지정 기준 및 장점”, <https://m.blog.naver.com/ngh2369/221493953017>.
- [18] 농산물우수관리 및 이력추적관리의 이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7.
- [19] 박성민(Park Sung-Min), “SNS상의 저작권침해 유형과 경미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법의 자제.“ 刑事法研究 26.3, 149-177, 2014.
- [20] 박소연, 문예은, 신규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이슈 : 메타버스와 저작권,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 [21] 박지원, Copyright Implications of the Use of Code Repositories to Train a Machine Learning Model (머신러닝 모델훈련을 위한 소스코드 이용의 저작권 쟁점) : GitHub의 Copilot을 중심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 [22] 이상훈, “탄소발자국과 탄소성적표시제”, 우리문화신문, <https://www.koya-culture.com/mobile/article.html?no=130396>, 2021.06.03

- [23]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격업소안내”, <https://goodprice.go.kr/introduce/store01.do>.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종로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1409,20210507\)](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종로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1409,20210507)).
- [25] 신기술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 [26] 양세정, 서인주, and 이성훈. “Everyday Fresh Maeil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사례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9.4 (2013): 159-175.
- [27] 오수진, “[관광]문체부, 국가차원의 '한국관광품질지정제' 시행“, 소비자정책동향no.6,2018.
- [28] 환경부, “환경성적표지 운영방안”, <https://www.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2192&fileSeq=1>.
-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적표지”, <https://www.greenproduct.go.kr/epd/epd/epdIntro05.do>.
- [30] 이강석(Kang-Suk Lee), “1인 미디어 시대의 영상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3.3, 2022.
- [31] 이현경, “SNS에서의 저작권법적 쟁점.“ Law & technology 8.6 (2012): 32-64.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중심으로.
- [32] 임규건, 최재영, 이웅희, “정품 콘텐츠 판매 오프라인 업체 지정제도 방안 연구: 저작권 OK 사례.“ Information systems review 19.4 (2017): 27-42.
- [33] 저작권보호센터,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 및 지정체계 연구, 한국저작권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09.
- [34] 저작권보호센터, “클린사이트 지정”, <https://www.cleancopyright.or.kr/work/appoint.php>, 2022.
- [3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종합),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 [36] 전용준, SNS 및 포털 등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시정권고, 2022.
- [37] 전재림, NFT(Non Fungible Token)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 [38] 전재희, “KS표시 지정제도 선진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2001).
- [39] 조원희, 주혜린, 전미선, “착한가격업소 인증제도 활성화의 영향요인 분석” .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7(1), 2021, 77-94.
- [40]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5.
- [41] 한국소비자원, “CCM지정제도”, <https://www.kca.go.kr/ccm/certSystemOutlineView.do>
- [42]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환경성적표지작성지침/\(2022-155,20220808\)](https://www.law.go.kr/행정규칙/환경성적표지작성지침/(2022-155,20220808)).
- [43] 한국저작권보호원, “[붙임3]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운영 매뉴얼(22.3.2.개정)“, 2022.
- [44]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안심“, <https://www.kcopa.or.kr/lay1/S1T356C360/contents.do>
- [45]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안심 지정제도 안내”, <https://www.kcopa.or.kr/lay1/S1T356C360/contents.do>, 2022.
- [46] 한국표준협회, “KS지정제도 개요”, [https://ks-pbi.ksa.or.kr/ksa\\_kr/959/subview.do](https://ks-pbi.ksa.or.kr/ksa_kr/959/subview.do)



※부록※

[부록 1] 저작권안심(CopyrightOK) 지정 현황( '22년 5월' )

1. 저작권안심(CopyrightOK) 온라인사이트 지정 현황(종합)

(단위: 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월	장르
음 악	15	18	40	48	42	음원, 악보, MR 등
영 상	5	4	2	6	5	영상, 드라마 등
출 판	18	18	16	25	23	ebook, 웹소설 등
만화웹툰	20	23	22	48	48	만화, 웹툰 등
교 육	31	33	35	39	42	e러닝
뉴 스	-	44	50	65	62	뉴스
B2B	14	32	25	-	-	콘텐츠 B2B 서비스
모바일	47	64	59	-	-	모바일 앱
기 타	63	38	39	55	53	공공,DB,이미지등
합계	213	274	288	286	275	-

\* '뉴스'는 2018년까지 '기타'로 분류

\* 2021년부터 모바일앱도 각 장르별로 분류, B2B는 기타로 분류

2. 저작권안심(CopyrightOK) 오프라인매장 지정 현황(종합)

2-1. '장르별' 지정 현황

(단위: 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월
음 악	62	66	65	59	59
출 판	896	888	74	78	78
캐릭터	-	269	243	244	167
기 타	158	4	2	2	2
합계	1,116	1,227	384	383	306

\* '기타'는 복합 매장(종교용품, 영화DVD, 도서 등), 악보 판매업체 등을 분류

2-2. '지역별' 지정 현황

(단위: 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월
서울	259	339	169	164	102
인천	21	19	20	14	14
부산	136	134	22	23	22
대구	16	22	13	15	15
대전	49	51	7	8	8
광주	85	86	13	13	12
울산	7	6	3	2	2
경기	254	282	81	93	83
세종	3	3	2	2	2
강원	21	22	10	7	5
충청	69	66	15	11	11
경상	82	85	18	20	20
전라	91	88	9	10	10
제주	23	24	2	1	0
합계	1,116	1,227	384	383	306

## [부록 2] 현행 저작권안심(CopyrightOK) 지정 및 운영 매뉴얼 (2022)

제정	2018. 05. 02.
개정	2019. 06. 24.
전면개정	2020. 08. 07.
개정	2020. 09. 11.
개정	2022. 03. 02.

###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 및 운영 매뉴얼

**제1조(목적)** 이 매뉴얼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함)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1.>

**제2조(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정의)**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11.>

1. "저작권 안심"이란 주로 내국인 이용자를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합법 저작물을 유통·이용하는 서비스(플랫폼)로, 보호원의 지정을 받은 서비스를 말한다.
2. "Copyright OK"란 주로 외국인 이용자를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합법 저작물을 유통·이용하는 서비스(플랫폼)로, 보호원의 지정을 받은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0.9.11.>

**제3조(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대상)**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 합법 저작물을 유통·이용하는 서비스
2.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기관)
3. 합법 저작물 판매·이용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
4. 신청일 기준으로 개시한지 3개월 이상 된 서비스
5. 저작권 안심은 주로 내국인 이용자를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합법 저작물을 유통·이용하는 서비스
6. Copyright OK는 주로 외국인 이용자를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합법 저작물을 유통·이용하는 서비스 <개정 2020.9.11.>

**제4조(저작권 안심(Copyright OK)지정 신청)** ①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본 매뉴얼 별지 제1호에 따라 '지정 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호원에 신청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별지 제2호의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 협약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②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 신청은 대상별로 각각 개별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동일하거나 단일 목적을 가진 기관(업체, 협회, 기관 등) 등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뒷면의 추가목록을 활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제5조(지정평가위원회)** ① 제4조에 따른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참석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임시 대행한다. <개정 2019.6.24.>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효율적인 지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력 파트너와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지역별 지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저작권 안심(Copyright OK)지정 평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에 대한 평가 <개정 2020.9.11.>
2.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개정 2019.6.2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 시 필요할 경우 업무와 관련된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대해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 및 관련자에게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제7조(평가 결과)** 평가 결과는 지정, 조건부 지정, 보류, 미지정으로 구분한다.

1. 지정은 심사 기준 만족
2. 조건부지정은 소규모의 시정요구, 보호원에서 시정 확인 후 지정 가능
3. 보류는 주요 항목에 대한 시정 필요, 지정위원회 시정여부 확인 후 지정 가능
4. 미지정은 지정 부적합 <개정 2020.9.11.>

**제8조(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또한 지정사에게는 지정서, 지정마크, 지정현판 등을 부여하며 [별표3]의 통합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3.2.>

②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별지 제3호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보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4.>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보호원은 해당 지정사에게 별지 제4호의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 안내 및 별지 제5호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6.24.>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 재평가한 후, 재평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이의신청자와 소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4.>

**제9조(지정기간)** ①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서비스의 지정기간은 결과확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연장을 원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전까지 '재지정신청서' 또는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보호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만료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지정 평가가 있기 전까지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지정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별표2]에 따른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 기준의 유지 <개정 2020.9.11.>
2. 사업자 및 담당자 변경 등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변경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통지 <개정 2020.9.11.>
3.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서비스에 부여된 지정마크, 지정현판 등을 타인에게 대여·증여·부착 금지 <개정 2020.9.11.>

4. 제11조에 따른 실태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시정요구의 이행
- ② 제1항의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지정대상은 제13조에 따라 지정취소할 수 있다.
- ③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 세부기준은 [별표1]을 따른다. <개정 2020.9.11.>
- ④ 보호원의 권고에 따라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서비스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11호의 저작물 관리 대장을 자체 작성하여 보관·관리 할 수 있으며, 보호원의 열람 및 사본 제출 등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제11조(실태점검)**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원은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20.9.11.>

1. 기 지정된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관련 민원 및 분쟁발생이 확인된 경우
2. 권리자 또는 이해당사자로의 점검요청이 있는 후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지정서비스의 지정요건 준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보호원이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2조(시정요구)** ①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원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 제11조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기타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② 시정요구를 받은 지정서비스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지정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원은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 저작권법 및 저작권 관련 법률 등을 위반한 지정서비스
2.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 평가신청서 중 제공된 정보나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지정서비스 <개정 2020.9.11.>
3.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미이행하고, 그 정도가 과하여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정서비스
4. 제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2회 이상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지정서비스
5. 제10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지정마크 및 지정현판 등을 대여·증여한 지정서비스
6. 지정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지정 포기를 원하는 경우
7.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말소 및 폐업된 지정서비스

8. 기타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지정 취소된 서비스의 이의신청은 제8조의 절차에 따른다.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인해 지정 취소된 서비스는 2년간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에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9.11.>
  - ④ 지정사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 시 수령한 지정서, 현판, 마크를 30일 이내에 삭제·폐기해야한다. <신설 2020.8.7.>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보호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매뉴얼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보호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2019. 6. 24.)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매뉴얼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보호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2020.8.7.)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매뉴얼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보호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2020.9.11.)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매뉴얼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보호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2022.3.2.)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매뉴얼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그룹별 구분 및 사후관리

<개정 2020.9.11.>

구분	사후관리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매월 1회) 모니터링 실시</li> <li>· 매월 서비스 운영 여부 모니터링</li> </ul>
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샘플링 현장점검(연 1회, 10% 이내 샘플조사) 실시</li> <li>· 현장점검 수행 시 별지 제10호 실태점검표 확인</li> <li>- 요청 시, 현장 방문하여 교육 및 컨설팅 등 제공</li> </ul>



[별표 2]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평가 세부기준 <개정 2020.9.11.>

유형	항목	세부 판단 기준
온라인	저작권법 및 보호정책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관련 정책 고지의 적절성(저장서비스 제공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복적으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의 채택 및 적용 여부(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다목)</li> <li>- 사이트 내 불법복제물에 대해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하였는지 여부(법 제103조 제4항)</li> <li>- 온라인상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처리 절차 구비 및 안내 여부(법 제103조)</li> </ul> </li> <li>○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준수 여부(공공기관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및 고지 여부</li> <li>-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의 적절성 여부</li> <li>- 공공저작물 개방(공공누리 적용) 여부</li> </ul> </li> </ul> ※ 공공기관 운영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지정 평가 전에 한국문화정보원의 평가진단을 받아야 함
	저작권 보호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전용게시판 또는 자료실 등 사이트 내 저작권 침해 가능성 소지 여부</li> <li>○ 온라인서비스 내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도입 또는 대응 방안 구비 여부</li> <li>○ 불법 추정 서비스 링크 존재 여부 및 저작권 침해 서비스를 광고하는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li> </ul>
	유해 저작물의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트 내 이용자 보호 정책 구비 여부</li> <li>○ 저작권법 이외 현행 법령 위반 여부</li> <li>○ 성인 콘텐츠 접근 시 성인 지정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지 여부</li> </ul>
오프라인	정품 저작물 유통·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 또는 기관, 업체 내 정품 저작물 판매·구매·서비스·이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복제물의 판매·구매·서비스·이용 여부</li> </ul> </li> </ul>
	관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원들이 지정 사업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올바른 저작물 사용관리 등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li> <li>○ 저작물 자산현황 리스트 및 저작물 관리대장을 제대로 비치하여 관리하는지 여부</li> </ul>
	소비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의 안심 구매를 위한 소비자 보호 환경 조성 여부(저작물 유통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입한 콘텐츠의 하자나 피해 발생 시 적절한 피해 보상체계 구비 여부</li> <li>- 교환/환불/품질보증 안내 및 허위 정보 제공 여부</li> <li>- 정당한 가격을 표시하여 판매</li> </ul> </li> </ul>
공통	사업자 신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법적 계약을 통한 콘텐츠만을 공급하는지 여부</li> <li>○ 최근 2년 간 신청업체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li> <li>○ 최근 2년 간 보호원으로부터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거·폐기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li> </ul>

**[별표3] 통합관리번호 부여 <개정 2020.9.11.>**

보호원은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사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여 관리한다.

가. 관리번호는 “제N□□□□S□□□(R□)호” 형식으로 부여한다.

나. 첫 영문 N은 온라인 유형, F는 오프라인 유형의 대상에 부여한다.

다. 첫 영문 뒤 4자리는 지정연도 끝 2자리와 평가회의 회차를 표시한다.(예시: 2020년 2차 평가 →2002)

라. 중간 영문은 콘텐츠 장르별로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장르	출판	영상	음악	교육	뉴스	이미지	만화/웹툰	캐릭터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	기타
표시	P	F	M	E	N	I	C	CH	S	A	V

마. 첫 국문 뒤 3자리는 부여순서 일련번호로 한다.

바. 마지막 영문 ‘R’ 은 재지정 대상에 부여하며, R 뒤에는 재지정 횟수를 표시한다.

(예시: 3번째 재지정 →R3)

# Copyright OK 지정마크

■ 심볼로그



국문(기본형)

영어	대만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사 실태점검표

\* 평가결과 변경 시에는 반드시 조사자 자필 사인 후 결과 수정을 원칙으로 함

지정대상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구분	점검항목	점검의견
기본사항	1. 신청서 상의 기본 정보와 일치 하는가?	예 / 아니오
	2. 정품 저작물(콘텐츠)만을 판매·구매·서비스·이용하는가?	예 / 아니오
관리운영	3. 구성원들이 지정 사업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올바른 저작물 사용관리 등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4. 기관(업체, 매장 등)에서 저작권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5. 저작물 자산현황 리스트 및 저작물 관리대장을 제대로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소비자 보호	6. 구입한 콘텐츠의 하자나 피해 발생 시 적절한 피해 보상체제는 갖춰져 있는가?	예 / 아니오
	7. 교환/환불/품질보증 안내 및 허위 정보 제공은 없는가?	예 / 아니오
	8. 정당한 가격을 표시하여 판매하는가?	예 / 아니오
신고사항	9. 최근 2년 간 신청업체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가?	예 / 아니오
	10. 최근 2년 간 보호원으로부터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거·폐기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는가?	예 / 아니오
	11. 타기관 지정 또는 표창사례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점검결과 및 소견 내용 :

0000. 00. 00.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